

2025

검역업무 지침



목 차

CONTENTS

제 1 장

총칙 _ 1

1-1 개념과 목적	3
1-2 정의	4
1-3 관련 법령 및 지침	5
1-4 검역관리 기본계획	7
1-5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8

제 2 장

검역조사 _ 11

2-1 검역조사 대상	13
2-2 검역 통보	17
2-3 운송수단 보건상태 신고 및 관리	19
2-4 검역 장소	22
2-5 검역 시각	24
2-6 검역조사	25
1. 공통사항	25
2. 공항 검역조사	31
3. 항만 검역조사	34
4. 육로 검역조사	40
2-7 검역조치	42
1. 출입국자에 대한 조치	43
2.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조치	49
2-8 검역증 발급	57
2-9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58
2-10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59
2-11 협조의 요청 및 현황 보고	62

제 3 장**감염병 예방업무 _ 65**

3-1 국제공인예방접종 사업	67
3-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	76
1.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77
2.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77
3. 위생지도 및 관련 교육·홍보	78
4. 기타	79
3-3 검역 정보 안내	88

제 4 장**검역공무원 _ 89**

4-1 검역공무원(권한과 자격)	91
4-2 검역선 등의 운용	92
4-3 검역공무원의 제복	93

제 5 장**행정사항 _ 95**

5-1 증명서 발급	97
5-2 벌칙과 과태료	102
5-3 기타	106

제 6 장**붙임 _ 107****제 7 장****참고 _ 167**

[일러두기]

- 이 지침은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세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지침은 아래 **법령 및 고시**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 「검역법」,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규칙」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검역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 및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지침은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www.kdc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법」 ⇒ “법”
 - 「검역법 시행령」 ⇒ “시행령”
 - 「검역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 「검역법」제12조의3 제3항 및 제12조의4 제4항의 전산시스템과 제29조의 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1 개념과 목적(법 제1조)

1. 개념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격리, 방역 등 일련의 감염병 예방 활동

2. 목적

전 세계적 기름·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한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제1장

총칙

제2장

전염병 예방

제3장

예감염병 예방

제4장

감염병 예방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1-2 정의(법 제2조)

1. 검역감염병

-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가’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질병관리청 고시)】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폴리오, 엠폭스(효력발생시점: '24.8.21.(수))
3. 위 각 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 Dengue, Chikungunya, Zika, Malaria, Rabies, Measles, Rubella, HIV, Tuberculosis, Hepatitis A, B, C, D, E, H1N1, H5N1, H7N9, Ebola, Marburg, SARS-CoV-2, etc.
※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의 검역감염병 지정 효력발생시점: '24.9.1.(일)

2.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2의2. 운송수단의 장 :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

3. 검역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5.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6. **감염병 매개체** :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쥐, 모기,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
7.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8.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1-3 관련 법령 및 지침

1. 법령

- 가. 검역법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 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훈령·예규·고시

- 가.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나. 질병관리청 검역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나.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3. 지침·매뉴얼

- 가.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2025)
- 나.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2025)
- 다. 「엠펙스 관리지침」(2024)
- 라. 「제1급 감염병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025)
- 마.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관리지침」
- 바.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025)
- 사.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2025)
- 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2025)
- 자. 「검역감염병 정보집」(2017)
- 차.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2024)
- 카. 「제1급 감염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대응지침」(2025)
- 타. 「홍역 대응 지침」(2025)
- 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지침」
- 하.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운영가이드」(2025)
- 거. 「국립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통합 관리 지침」(2024)
- 너. 「크루즈 및 여객선 검역 표준매뉴얼」(2024)
- 더. 「항공기 내 위생점검 표준 운영 매뉴얼」(2024)
- 러. 「나포·귀순·조난 선박 검역절차」(2023)
- 머. 「美군용 선박 검역 절차」(2023)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검역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

나. 검역소장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다.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가.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나.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다.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라.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 강화 방안

마. 그 밖에 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법 제5조)

1. 지정·해제 기준

가. 질병관리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함

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해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항공사, 선사, 해운대리점 등 관계기관에 문서 통보 및 안내

* 검역소장은 검역정책과로부터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해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항공사, 선사, 해운대리점 등 관계기관에 문서 통보 및 안내

2. 검역관리지역 지정 효력

구분	지정효력
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검역법」제12조의2)
중점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검역법」제12조의2)

3. 지정·해제 절차

가.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는 검역감염병의 발생 동향과 위험도 등을 평가하고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나.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전문
위원회

제3장

예방감
염병
관리

제4장

검역
사무
원

제5장

행정사
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제2장

검역조사

제2장 검역조사

2-1 검역조사 대상(법 제6조)

1. 검역조사 대상

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나. 검역조사 대상 화물

- 1) 감염병 매개체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의심)된 자가 소지한 물품
-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단,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 제외

다.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수행, 긴급 위난 시의 구조 등을 이유로 ‘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

라.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음

2. 검역조사 생략

가. 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검역조사 생략 신청 절차

1)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조사 생략신청서를 해당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시행령 제3조제3항)

가)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중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써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검역조사 생략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항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로 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입항 24시간 전 제출. 다만,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 출항하는 즉시 제출)

다) 항만의 경우 다음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생략 받은 장소의 입항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역조사 시행

* 단,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2호 및 3호의 경우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2배가 경과한 경우에는 서류검역 실시가능

2)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접수·심사 후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

* 붙임 제22호서식(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 통보

** 항공기 조사 생략 심사 결과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전까지 서면 통보

3) 검역조사 생략 심사 합격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인 경우

가) 검역조사를 생략한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도착지에서 검역조사(서류심사 또는 승선·승기 검역)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

나) 다음 도착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메모보고 또는 서면으로 관련 사실 통보

- 4) 검역조사 생략 심사 불합격 운송수단은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받은 관할 검역소에서 승선 검역 시행

다. 전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조제1항)

-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써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
-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서 사람 및 화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

* 항만의 경우 “일시”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101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규정」의 통과선박 정의에 따라 정박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말함

- 3) 군용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우
- 5) 생략 범위 :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전부 생략 가능

라.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조제2항)

- 1)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서 화물을 내리지는 않으나, 사람을 내리는 경우

* 항만의 경우 “일시”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101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규정」의 통과선박 정의에 따라 정박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말함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검역조사 또는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3) 생략 범위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대해 생략 가능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역조사 실시

※ 선박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항(또는 경유)하여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내 도착하는 경우 하선하는 승객·승무원에게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경유 신고서(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마. 국립검역소장은 검역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이 시행규칙 제6조의4 제2항제1호, 제6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없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법 제12조제1항】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여부와 번식 상태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2 검역 통보(법 제9조)

1. 공통사항

- 가.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하여야 함
- 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 ‘가~나’에도 불구하고 나포,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음
- 라.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검역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함
- 마. 검역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환자등”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바. 질병관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통일부 장관과 협의하여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12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2. 항공기

- 가. 제출 대상 :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장
-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다. 제출 방법 : 항공기의 소유자가 항공사 경유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검역 장소 도착 30분 전까지 제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GD(General Declaration) 자료를 전송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같음

3. 선박

가. 제출 대상 :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장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제출로 대체 가능(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다. 제출 방법 :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대리점(대행)이 검역 장소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 다만,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 출항하는 즉시 제출

* 해운대리점 또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되, 해운대리점이 없는 요트의 경우 fax로 제출할 수 있음

4. 열차·자동차

가. 제출 대상 :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열차·자동차의 장

나. 제출 서류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역 통보 절차 중 별지 제4호서식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3

운송수단 보건상태 신고 및 관리(법 제12조의3~제12조의5)

1. 의의

- 가. 운송수단 보건상태 신고란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역조사를 받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국내로 진입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환자·사망자, 매개체 등 운송수단 내 보건상태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함
- 나. WHO(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정(IHR)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등에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대한 보건상태를 신고받도록 하여 전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공통사항

- 가.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기 위하여 검역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 보건상태를 신고하여야 함
- 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전 운송수단의 장이 신고받은 운송수단 보건상태를 숙지하고,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서면상 확인

3. 운송수단별 보건상태 신고

가. 항공기

- 1) 제출주체: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장(항공기 기장)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Pilot in Command에 대응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항공기 기장으로 함

- 2) 제출시점

- 가)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까지 관할 검역소에 신고
- 나) 항공기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에 유선통보하고 시스템 변경신고

3) 제출서류: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별지 제5호 서식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 제출내용: 제출내용: 기내 보건상태에 대한 사항(항공기 기본 식별정보, 운항정보,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감염병 매개체 발견여부, 구제조치 정보 등)

4) 제출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제출

나. 선박

1) 제출주체: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장(선장)

※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명령에 따라 선장은 선박의 모든 인원을 지휘·관리함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을 선장으로 함

2) 제출시점

가) 선박 입항 전까지 관할 검역소에 최초 신고

단,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 시까지 승선검역 대상 선박은 입항 시 제출

나) 선박의 장(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에 유선통보하고 시스템 변경신고

3) 제출서류: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별지 제8호 서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제출내용: 선내 보건상태에 대한 사항(선박 기본 식별정보, 운항정보, 선박 탑승자 정보, 선박위생 증명서 소지여부,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감염병 매개체 발견여부, 위생환경, 밀항자, 소독 등 위생조치 정보, 선장 서명 등)

4) 제출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제출

※ 검역관은 선박 입항 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상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박 입항 후 검역완료 통보

다. 육로

1) 제출주체

가) 열차: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열차의 장(열차장)

※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조약 제2563호) 내 서식에 따라 열차 승무원 중 열차장이 대표로 검역통보

나) 자동차: 검역 조사의 대상이 되는 육로 운송수단의 장(운전자)

2) 제출시점

가) 열차 및 자동차 도착 전까지 관할 검역소에 신고

나) 운송수단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에 유선통보하고 시스템 변경신고

3) 제출서류: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별지 제9호 서식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 제출내용: 자동차·열차 내 보건상태에 대한 사항(자동차·열차 기본 식별정보, 운항정보, 탑승자 정보,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감염병 매개체 발견여부, 위생환경, 밀항자, 소독 등 위생조치 정보, 운송수단 장의 서명 등)

4) 제출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제출

4. 운송수단의 보건상태 관리

가. 검역관은 신고된 보건상태 신고서의 내용 중 운송수단 내 환자 또는 사망자 기록,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과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나. 운항 중 조치가 어려운 소독·구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항 후 즉시 수행하도록 조치

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송수단의 장이 보건상태 신고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는지 확인

라. 운송수단의 장이 보건상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 법 제40조(양벌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운송수단의 장을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함

2-4 검역 장소(법 제10조)

1. 공통사항

가. 검역조사 대상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1 검역 장소에서 실시

나. 단,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 실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공항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다음 사유의 경우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 시행

가.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하기 어려운 경우

나. 항공기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다.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하기 어려운 경우

라. 그 밖에 '1)~ 3)'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항만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 시행

가.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나.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하기 어려운 경우

다.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이 어려운 경우

라. 선박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마.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하기 어려운 경우

바.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사. 그 밖에 ‘1) ~ 6)’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검역소장의 지시 없이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 또는 도착하였을
 경우, 검역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

4. 육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 장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 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입 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 운행사무소 및 차량 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 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5 검역 시각(법 제1조)

1. 검역조사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 기간의 계산)를 준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 처리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즉시 검역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승무원 및 화물을 내릴 수 있음

가.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야간에 검역공무원이 해역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승선해야 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험하다고 검역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해야 하며 검역소장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 완료

2-6

검역조사(법 제12조~제13조)

1. 공통사항

가. 출입국자 검역조사

1) 발열감시

가) 대상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자

나) 방법

(1) 열 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 ℃ 이상) 확인

- * 1차 온도 측정(열 감지 카메라 등)에서 이상으로 감지된 출입국자는 고막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 측정 시행
- *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고막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시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국내 주소** 등을 성실히 기재토록 요구
- * 측정장소·측정장비·타겟검역 실시 등에 따라 발열 감시 기준 조정 가능

〈공항만 발열감시 방법〉

구분	화물기 또는 화물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공항	공항 검역대에서 발열감시	
항만	(승선검역) 검역관이 직접 전원 발열 체크 (서류검역) 자체 발열 체크 후 검역소에 제출	(하선자) 여객터미널 검역대에서 발열 감시 (승무원) 검역관이 직접 전원 발열 체크 또는 자체 발열 체크 후 검역소에 제출

※ 모든 입국자는 발열 감시 필요

- * 서류검역 대상 선박인 경우, 선박 자체 발열 체크 후 붙임 제38조 서식 「승무원·승객 체온 체크 결과지」 제출
- * (제출시기) 선박 입항일 또는 검역 통보일
- * (보존기간) 2개월

(2) 발열 등 검역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검역관이 검역조사 후 공중보건 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다만, 공중보건 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이 상주하지 않는 검역소의 경우 관할 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의 협조를 받아 조치

※ **(검역조사)** 붙임 제4호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작성 및 붙임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여부 확인 → (공중보건 의사(이하 '공보의') 또는 역학조사관 인계) 건강상태질문서 및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해당 감염병 역학조사서 추가 작성

*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작성 생략 가능

2) 검체 채취

가) 채취 대상

(1) 공통

(가) 검역관리지역 체류, 확진환자 접촉, 임상증상 등으로 검역감염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나) 호흡기 또는 수인성·식품매개 검역감염병 증상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검역감염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2) 호흡기 검역감염병 의심자

37.5 °C 이상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수인성·식품매개 검역감염병 의심자

설사·복통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나) 채취 방법

붙임 제4호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및 붙임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후 검체채취 및 검역조사 시행

* 설사 증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붙임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 증상자용) 추가 작성

다) 검체 종류

(1) 수인성·식품매개 검역감염병 의심자 : 직장도말 또는 대변 검체

* 단, 직장도말은 검역관이 설사 증상자에게 검체채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설사 증상자가 직접 채취하게 하거나 직접 채취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검역관 또는 공중보건 의사 또는 역학조사관이 채취

(2) 호흡기 검역감염병 의심자 : 인후(상기도) 도말 또는 객담

(3) 기타 감염병 진단에 필요한 검체

라) 검사 의뢰

(1) 검역소에서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대응센터에 검사 의뢰

◦ 냉장 또는 실온 보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검체 보관 후 검체의뢰서(붙임 제35호서식)와 함께 질병대응센터에 의뢰

* 질병대응센터와 검역소 간 검체의뢰서 서식 협의 가능

(2) 질병대응센터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검역소에 통보

마) 검사항목 등

(1) 수인성·식품매개 검역감염병 등 검사 : 콜레라균(독소형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2) 호흡기 검역감염병 검사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검역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포함 가능)

(3) 기타 감염병 진단에 필요한 검체 : 입국자의 방문국가 등을 고려하여 의심되는 감염병 종류 선택 후 실시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 절기 동안 해당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강화

나. 운송수단 검역조사

※ 크루즈·여객선은 「크루즈 및 여객선 검역 표준매뉴얼」, 나포·귀순·조난 선박은 「나포·귀순·조난 선박 검역절차」, 항공기 내 환경검사는 「항공기 내 위생점검 표준 매뉴얼」을 따름. 또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은 「2025 검역감염병 대응지침」 및 각 감염병별 지침에 따름.

1) 수인성 검역감염병 등 환경검사

가) 기간 : 연중

※ 콜레라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5~9월에 검체채취 강화

나) 대상 : 검역소장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채취대상 운송수단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검역관이 현장에서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체채취 여부 결정.

- (1) 콜레라 검역관리지역에서 최종 출발한 운송수단으로써 콜레라 최대 잠복기간(5일) 이내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 (2) 최근 1년 입국 운송수단 내 수인성 병원체 검출 현황
- (3) 최근 1년 입국 운송수단 내 수인성 감염병 환자 등 발생 현황
- (4) 출발 및 경유 국가의 수인성 감염병 발생 동향
- (5) 운송수단 내 전반적인 위생상태
- (6)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다) 채취장소 및 건수: 검역관이 위생상태 확인 후 검체채취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1~3건 채취

라) 검사의뢰

- (1) 검역소에서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대응센터에 검사의뢰
 - 냉장 또는 실온 보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검체보관 후 질병대응센터에 의뢰
 - * 질병대응센터와 검역소 간 검체의뢰서 서식 협의
- (2) 질병대응센터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검역소에 통보

마) 검사항목 등

- (1) 콜레라균(독소형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 (2) 기타 감염병 진단에 필요한 검체: 입국자의 방문국가 등을 고려하여 의심되는 감염병 종류 선택 후 실시

다. 신고 의무

1) 신고 대상

- 가)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2) 신고 방법

- 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검역대 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제출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1)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선장이 ‘승무원 및 승객 명부’(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에 따른 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가)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 나)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 다)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라)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마)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는 조치

◦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

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장소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 중 적절한 곳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가)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나) 그 밖의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검역구역의 특성, 접근성 등 고려)

※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종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역할) 해외여행객에게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 국가별 주요 감염병 현황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을 제공

2)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기능

가) 해외 유행 감염병 발생 현황 등 정보제공

나) 해외 유행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다) 건강 상태 신고 접수 및 상담

라) 감염병 의심자 발견 시 담당 부서(담당자)와 연결 및 후속 조치 매개 등

3)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운영

가) 최신 안내문 등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여 출입국자에 제공

나) 상주직원을 두어 운영하되, 검역소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콜센터 방식)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검역소장이 각 검역소의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운영

다) 검역소장은 입국자가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위치(주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국장 및 검역소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 게시

* 상주직원 부재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 등 안내게시

라) 검역소장은 외국인 통역 서비스* 활용, 건의함 설치 등 신고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영사콜센터(02-3210-0404),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BBB 코리아 (1588-5644) 등

4) 신고내용 관리 및 보고

가) 별도 대장(붙임 제36호서식 활용)을 통해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 관리

나) '가'에 따른 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검역소장은 운영실적 보고

2. 공항 검역조사

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장 또는 그 승객과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음(서류 제출 시 정보통신기기 활용 가능)

1) 제출서류

가)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 항공기의 장이 제출)

* 항공사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

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별지 제6호서식 : 항공기의 장이 제출)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시 항공사의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자료 전송으로 대체 가능

다) 건강상태 질문서(별지 제7호서식 : 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7호서식은 필요한 언어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라)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도착 후 즉시)

가) 항공일지(항공기의 장이 제시)

나)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검역조사 방법

1) 서류심사

항공기의 장이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 심사 후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역조사 완료(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가능)

2) 승기 검역

가) 승기 검역 대상(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1)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또는 보건상태 신고서 등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기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기 검역의 경우 붙임 제28호서식인 검역조사서 작성 및 보관

다) 검역관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환경검체 채취 대상 항공기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검체 채취를 실시한다.

- (1) 콜레라 검역관리지역에서 최종 출발한 항공기
- (2)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 (3) 운송수단 내 수인성·식품매개 병원균이 검출된 항공기
- (4) 해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동향
- (5)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 채취장소 및 건수 : 기내 변기 1건, 접이식 테이블 1건, 총 2건 채취

※ 감사의뢰 및 검사항목 등 기타 사항은 「항공기 내 위생점검 표준 운영 매뉴얼(제1판)」을 따름

3) 게이트 검역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 및 감염병별 대응 지침 참조

4) 의심 환자 항공기 선(先)하기 후 검역

항공기 입항 전 기내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와 협의하여 항공기 도착 후 의심환자 선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실시

5)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역조사 실시

다. 검역 전 탑승

1)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항공기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탑승 불가(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 대상)

2) 검역 전 탑승의 허가

가) 제출서류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업무 관련 입증서류)

나) 검토 및 허가

(1) 허가목적, 허가요청 기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탑승을 허가

(2) 허가 방법 : 제출받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1부에 붙임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

* 검역 전 탑승 허가 여부 확인 시, 대상자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요구

3) '1)' 에도 불구하고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나)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검역 전 탑승자의 신고 및 조치

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검역 전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경우는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

나) 검역소장은 ‘가)’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실시

(1)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조사 등 확인

(2) 개인위생 수칙, 국내에서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또는 검역소)에
즉시 신고 등 예방수칙 안내

5) 검역 전 탑승 허가대상자 발급현황 관리

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 대장 : 붙임 제2호서식

나) 허가번호: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기재

예) 허가번호 : 제2023-00001호

6) 검역 전 탑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탑승한 자 발견한 때 : 검역조사 시행 및 과태료
부과 조치(법 제41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항만 검역조사

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선박의 장 또는 그 승객 및 승무원에게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음(서류 제출 시 정보통신기기 활용 가능)

1) 제출서류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선장이 제출)

【승무원 및 승객 명부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방법】

- (승무원) 해운대리점(여객선사)명 또는 해운대리점(여객선사) 주소·전화번호
- (승 객) 국적 및 국내 체류 자격에 따라 기재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국내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 (단기체류외국인) 여행사명 또는 여행사 주소·전화번호나 체류하는 숙소 주소·전화번호

- 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항만 입국자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구분	수행방법	비고
승선검역	입국자 전수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단,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제2항 제3호 '입항 전 검역관리 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유증상자만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서류검역	미제출	

※ 검역감염병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또는 제외 시 수행방법 등 변경 가능

- 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 상태 신고서(선장이 제출)

- 라)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 가) 항해일지(선장이 제시)

- 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 다) 그 밖에 여권 등 검역 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검역조사 방법

1) 서류검역

- 가) 검역소장은 검역을 신청한 선박이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 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류심사 잠정 승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가능), 입항 시 전산으로 접수된 서류(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선박 보건 상태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등) 최종 승인 여부 검토

* 항해일지 및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등 선박 보건위생관리 시 확인

** 국외에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 필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증명서 첨부, 이메일 또는 팩스 등)

나) 서류심사 결과,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승선 검역 실시(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 서류심사 검역 완료 조치 전,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열감시(체온체크 결과지) 등 확인

다) ‘나’에 따라 검역조사 완료된 서류심사 대상 선박 중 일부 선박을 선정하여 보건위생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2) 승선 검역

가) 승선 검역 시행하는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1)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최대 잠복기간 경과 계산에 관하여 출항일을 불산입한다.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

※ 최대 잠복기간 경과 계산에 관하여 출항일을 불산입한다.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 위생관리 면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5)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선 검역을 시행하는 경우, 붙임 제28호서식 검역조사서 작성·보관

(1) 붙임 제28호서식 검역조사서에 따라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식품 보관 및 조리실 청결 여부, 적재화물의 감염병 병원체 오염(의심) 여부 등 위생상태 점검

- (2)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또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 검체 채취 실시

※ 채취장소 및 건수 : 변기오수, 조리실 등 1 ~ 3건 채취

※ 검사의뢰 및 검사항목은 '제2장 검역업무' > 2-5. 검역조사 > 1. 공통사항 > 가. 출입국자 검역조사'에 준하여 조치

다) 승선(보건위생관리 포함) 검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

- (1) 검역관 근무 조 편성 시 2인 이상 검역관으로 구성

* 조조·야간·휴일 중 같은 시간대 검역대상 선박이 근무인원 이상으로 다수 입항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1인이 수행

- (2) 구명조끼·안전모·안전화 등 안전 장비 착용

- (3) 검역 차량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철저(특히 야간운전 주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검역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해상검역, 접안검역 등 사고유형별 안전대책과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권역 질병대응센터별 자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3)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 시행

다. 선박 보건위생조사

- 1) 서류로 검역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제출서류 사실 확인 및 보건위생조사 실시

가) 보건위생조사 대상

- (1) 검역관리지역등을 출항(또는 경유)한 선박으로서 검역감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 입항하는 선박
- (2) 소독시행 명령 시점으로부터 승선 검역이나 보건위생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선박
- (3) 최근 1년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1회 이상 검출된 선박
- (4) 최근 1년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외 감염병균이 3회 이상 검출된 선박

- (5) 고철, 어패류, 목재, 곡류, 사료 적재 선박
- (6)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7)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나) '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조사 제외가 가능한 경우

- (1) 외항 입항 후 접안 계획이 없는 선박
 - (2) 접안 후 단시간(3시간) 내 출항하는 선박
 - (3) 입항일 기준 1개월 이내 승선 검역 또는 보건위생조사 이력이 있는 선박
 - (4) 현업공무원 미지정 검역소로서 근무시간 내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상악화, 인력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 2)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 시행 및 항해일지·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등 서류 확인
- 3) 보건위생조사 결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번식이 확인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염병 원인 병원체 확인을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하고 위생 상태 개선명령 또는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 명령 실시(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동금지 등 적절한 검역조치 수행)

라. 검역 전 승선

- 1)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 불가(검역공무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한 사람은 검역조사 대상)

2) 검역 전 승선의 허가

가) 신청대상

- (1) 「도선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도선을 요청받은 도선사(도선수습생을 포함. 이하 같음)

* 도선사 운영협의회를 통해 단체 접수 가능

- (2) 접안 전 해상 필수 작업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

나) 제출서류

-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1부
- (2) 도선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도선수습생의 경우 「도선법」에 의한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합격증서 사본)
- (3)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 면허·자격증명서 등 소속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작업일정 등 업무 관련 입증서류

다) 검토 및 허가

- (1) 허가목적, 허가요청 기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역 전 승선을 허가
- (2) 신청자에게 1회 승선할 수 있도록 허가 기간(시간)을 정하여 검역 전 승선 허가. 다만, 도선사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허가 기간을 정하여 허가 가능

* 도선사 대상 허가 기간을 정할 때는 퇴직예정일 등 해당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허가 이후 변동상황(퇴사, 면허취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소에 통보 하도록 공문 등으로 안내

- (3) 허가 방법 : 제출받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1부에 붙임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필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 다만, 도선사의 경우에는 허가필을 날인한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교부 생략 가능

* 검역 전 승선 허가 여부 확인 시, 대상자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신청서 요구. 다만, 1년의 범위에서 검역 전 승선을 허가받은 도선사의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 가능

3) 검역 전 승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나)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검역 전 승선자의 신고 및 조치

- 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검역 전 승선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경우는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

나) 검역소장은 신고한 자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실시

- (1)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조사 등 확인
- (2) 개인위생 수칙, 국내에서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또는 검역소)에 즉시 신고 등 예방수칙 안내

5) 검역 전 승선 허가대상자 발급현황 관리

가)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 대장 : 붙임 제2호서식

나) 허가번호 : 연도(4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기재

예) 허가번호 : 제2023-00001호

6) 검역 전 승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한 자를 발견한 때 : 검역조사 시행 및 과태료 부과 조치(법 제41조제2항제3호,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4. 육로 검역조사

가. 검역조사 관련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 상태 신고서(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출)
- 3) 별지 10호서식에 따른 개인 검역신고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나. 검역조사 관련 제시서류

- 1)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
- 2)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참고]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주관·검역소 협력 업무

□ 검역단계 뎅기열 조기발견사업

○ 사업 배경 및 목적

- 해외에서의 발생 증가 및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토착화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검역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필요
- 환자발생 後 조치가 아닌 검역단계 능동적 先 대응으로 뎅기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국내유입 사전 차단

○ 세부 내용

- (참여 기관)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 13개소
 - (검사 대상자) 유증상자로서 사례분류된 자, 입국자 중 모기물림 등으로 뎅기열 검사 희망자
 - (사업기간) 연중
 -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확인된 유증상자(발열 등) 대상 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실시(NS1 Ag, IgG/IgM)
 - * 증상 없이 모기물림 등으로 검사 희망자의 경우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검사 가능
 - 신속키트 양성자의 경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국자 추적관리(또는 공문)를 통해 주소지 보건소로 정보 연계
 - *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기반 의심환자는 음성인 경우에도 통보
- ※ 모기매개감염병 양성자 발생만으로 격리 및 소독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님
- 출·입국자 대상 해외유입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맞춤형 예방 홍보
 -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내 홍보물 비치, 배너 설치, 유관기관 활용 등
- ☞ 구체적 사항은 '2024년 검역단계 뎅기열 조기발견 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2-7

검역조치(법 제15조~제21조)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위임

- 법 제37조, 시행령 제7조 -

□ 질병대응센터장에 위임한 권한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4호의2)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검사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7호)
-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법 제16조제2항)

□ 검역소장에 위임한 권한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법 제15조제1항제1호)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법 제15조제1항제2호)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3호)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4호)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6호)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7호)
-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법 제15조제1항제8호)
-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것(법 제15조제4항)
- 관계기관 협조 요청(법 제15조제5항)
-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격리조치(이송 포함) 및 관련 협조 요청(법 제16조제1·3항)
- 검역감염병 접촉자·위험요인 노출자 건강상태 감시 또는 격리 요청(법 제17조제1항)
-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조치(법 제19조제1항)

1. 출입국자에 대한 조치

가.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1)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에 대한 조치

가) (유증상자)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 및 검역감염병 별 대응 지침에 따름

나) (의사환자)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발생보고 및 시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등에 한함(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대응 범위) 참조)

2) 접촉자에 대한 조치

가) 검역감염병별 대응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에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여 조치(지침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감염병 대응과에 확인)

나)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발생보고 및 시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등에 한함(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대응 범위) 참조)

나. 설사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1) 집단 설사(2인 이상)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 발생 보고 :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즉시 보고

나) 조치사항

(1) 추적조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설사 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검역조사 시행 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의심환자 여부 및 증상의 경중에 따라 조치

* 설사 증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붙임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설사 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 추가 작성

(2) 설사 증상자 및 단체여행객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하여 설사 증상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체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

2) 설사 증상자(1인)가 발생한 경우

가) 추적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 증상자 관리를 위해 설사증상자(또는 직장도말,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통보

다.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가) 콜레라균(독소형 O1 또는 O139)

(1)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즉시 신고, 관련부서*와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 검역정책과·감염병관리과·세균분석과에 보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검역소에 통보

※ 콜레라균(독소형 *V. cholerae* O1 또는 O139)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

(2) (검역소)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여행객 전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며,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는 단체여행객에 대해 설사 증상 등 이상 여부 확인 및 유증상자 검체채취 등 필요 조치 시행

-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 결과 보고서 확인

※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병원균 검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음

나)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1)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 검역정책과·감염병관리과·세균분석과에 보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검역소에 통보

※ 3급 및 4급 감염병 병원균인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등 기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에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병원체 검출 결과 입력

(2) (검역소)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여행객 전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며,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는 단체 여행객에 대해 설사 증상 등 이상 여부 확인 및 유증상자 검체채취 등 필요 조치 시행

2) 그 밖의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감염병 병원체

가)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 검역정책과·신종감염병대응과, 종합상황실에 보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검역소에 통보

나) (검역소) 환자에 대해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등 실시. 환자의 인적사항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 기관 등 격리시설로 입원 조치 및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 통보 (방역통합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2)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거주지 관할 시·도 (시·군·구)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1) 상황 보고 :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즉시 보고

* 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등에 한함(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대응 범위) 참조)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가) ~ 마)'의 시설에 격리하며,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이 부족한 경우 임시격리시설 설치·운영

가)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참고5의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 참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다) 자가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마)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바) '가) ~ 마)'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격리시설 설치·운영

(1) 검역소 내 별도로 구획된 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참고4 임시격리실 설치·운영 기준 참조

3) 사람 간 전파가 낮은 다음의 경우는 격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급속히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나) 검역관리지역등이 아닌 곳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난 경우

4)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하였을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발급

가) 발급 대상자: 격리대상자,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격리대상자가 지정한 사람

나) 발급 방법: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발급하며, 종이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5)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음

가)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허가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1)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나)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6)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 조치(병원이송 포함)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 요청

마.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1) 발생 보고 :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에 즉시 보고

2)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 사항과 감시 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

*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가)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 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4)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및 격리는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콜레라 : 5일
 - 나) 페스트 : 6일
 - 다) 황 열 : 6일
 - 라)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 10일
 - 마)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 바)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14일
 - 사)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아) 신종인플루엔자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자) ‘(가)’ 내지 ‘(아)’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잠복기 : 폴리오(21일), 뎅기열(7일), 치쿤구니아열 (12일), 지카바이러스감염증(14일), 홍역(21일), 마버그열(21일), 라싸열(21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14일), 엡폭스(21일)
- 5) 검역소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감염병 의심 입국자추적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질병관리청 및 입국자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자동 통보

〈추적조사 대상 통보기준〉

구분		통보기준	통보내용
출입국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발견(확인)된 경우	1인의 경우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단체여행객(2인 이상)의 일원인 경우	단체여행객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 통보
	설사 증상자가 확인된 경우	1인 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직장도말 또는 채변) 여부 등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2인 이상의 집단 설사 증상자가 확인된 경우	유증상자와 단체여행객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운송수단	콜레라균(독소형 <i>V.cholerae</i> O1 또는 O139)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운송수단 탑승자 전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2인 미만 설사 증상자는 추적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귀가 후 증상 발현 등 사후관리를 위해 통보

2.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조치

가.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1) 콜레라균(독소형 *V.cholerae* O1 또는 O139)

가)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 검역정책과·감염병관리과·세균분석과·생물안전평가과에 즉시 보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검역소에 통보

나) (검역소) 입국자 전원 인적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즉시 통보하여 설사 증상 등 이상 여부 확인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통보)

-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붙임 제27-1호, 제27-2호 서식의 검역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병원균 검출 결과 통보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고,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소독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소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
- *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결과 통보 전 또는 운송수단이 소독을 시행하지 않고 출항한 경우 : 가)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검역소에 통보하여 차항지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이관하여 소독이행을 한 후 소독결과보고서 확인 나) 차항지가 해외일 경우 해운대리점을 통해 소독이 필요한 선박임을 통보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선박 이력 확인 가능토록 정보 관리 후 차후 해당 선박이 국내 입항 시 보건위생조사 가능토록 수행(이 경우 검역관리지역 등에서의 입항 여부 관계없이 보건위생조사 수행)

2) 그 밖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 (2급)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3급) 비브리오패혈증균 (4급)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가)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 * 검역정책과·감염병관리과·세균분석과에 즉시 보고 및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검역소에 통보
- * 다만, 4급 감염병인 살모넬라균(S. Typhi, S. Paratyphi A, B, C 외), 장염비브리오균과 병원성대장균은 발생 보고 제외

나) (검역소)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붙임 제27-1호, 제27-2호 서식의 검역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병원균 검출 결과 통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법 등 지도

- * 지도 방법: 자체 소독 시행 권장 및 조치 결과 회신 요청(별지 제15호서식 활용 가능). 비협조 시 차기 입항 시 보건위생조사 강화

3) 검역조사(보건위생조사 대상 선박 포함) 결과 감염병원균이 검출된 해당 운송수단이 외국으로 출항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입항한 경우, 검역소장은 검역 장소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소독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소독 조치

1) 소독 명령

가)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할 수 있음

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역 일정, 출항 일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 발급

다) ‘나’의 명령 사실을 서면으로 그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음

2) 소독이행

‘1’의 소독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라 소독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소독약품

사용 약품 제제는 환경부 등의 승인을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 준수

※ 소독 약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소독 결과 확인 시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나) 소독약품의 환경부 등의 승인 여부 및 약품 사용기준 확인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 참고3의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예시 참조

4)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가) 소독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시행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 제출. 다만, 항공기나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역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시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 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붙임 제23호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 다만, 지속해서 소독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 기준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 소독시행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에 해당 사실 통보

라) 소독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완료 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 결과 보고서 제출

마) 검역소장은 소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5)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나) 가스측정기 및 가스 방독면 등 가스 소독에 필요한 장비

다) 운송수단 및 수출·입 화물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 보유

* 검역소장은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운송수단 입항 대수 및 소독 건수(건/년) 등)과 관련 법령(「검역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HCN·MB 등)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붙임 제23호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약제(HCN·MB 등)의 보유 기준을 소독대행업체(자)에 통보

6) 수입 폐선 및 고철 화물 소독

가) 수입 폐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 결과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또는 매개 우려가 있어 소독이 필요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쥐잡이 소독(HCN 훈증소독) 또는 분무소독(살충 또는 살균소독) 실시

나) 수입 고철 화물

(1) 수입 고철 중 각종 병원체나 감염병 매개체 등의 유입이 우려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 시행

(2) ‘(1)’의 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 수입 고철 소독기준 및 소독 방법 등의 적정 이행 여부
- 각종 병원체나 감염병 매개체 등의 유입이 우려되는 수입 고철 소독의 경우, 선박 내 또는 부두(하역장, 야적장 포함)에서의 소독 실시 여부
- 동 화물의 작업장 주변에 대한 위생적인 청결 상태 유지 여부
 - * 고철 소독을 이행한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처리이행 사항

(3) 고철 수입자와 소독업무대행자 준수사항

-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 시 야적장으로 이송 후 위생 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 실시
- 고철 하역장 및 고철 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 금지 조치
- 고철 수입자가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 내용에 고철 소독과 흙 및 쓰레기 소독을 구분하여 계약도록 하며, 소독업무 대행자의 인적 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
 - * 수입 고철을 하역장에서 야적장으로 이송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처리이행 사항
- 고철 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 여부 확인

-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붙임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입 고철 소독계획서 및 붙임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 고철 소독 결과 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
- 고철 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 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수입 고철 소독기준

- 살충 소독기준

원제 1L당 살포기준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1,000톤 기준)
약품명	원제량	살포량	살포 면적	살포 면적
살충제	1ℓ	40cc/m ²	2,500m ²	16,500m ²

- 고철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고철의 적재 방법에 따라 하역장소 및 야적장 등의 면적 기준을 관할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 하역장소 및 야적장 면적이 소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독면적에 대한 기준을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함
- 수입 컨테이너화물(고철) 소독기준은 담당 검역 소장이 인정하는 소독기준 및 소독 방법에 따름
- 고철 톤수(량)에 대한 살포 면적(m²) 산출기준
 - 고철 소독면적은 500톤(3,000m²)단위로 산출하되, 500톤 단위 기준 이하 또는 이상의 잔여 톤수에 대한 고철 소독 면적산출은 250톤을 기준으로 절상·절하하여 500톤 단위로 살포 면적을 산출
 - 고철 하역 시 소독면적 : 1,000톤당 6,000m²
 - 고철 야적장 이송 후 하역장소(부두) 소독면적 : 고철 톤수와 관계없이 3,000m²
 - 고철 야적장 이송 후 야적장 및 그 주변 소독면적 : 고철 톤수와 관계없이 7,500m²

- 1,000톤 미만의 고철 소독의 경우 1,000톤을 기준으로 소독시행

예시)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 톤수	살포 면적(㎡)	원제량(ℓ)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9.0
10,000	70,500 (60,000+3,000+7,500)	28.2
30,000	190,500 (180,000+3,000+7,500)	76.2

다. 이동 등의 지시

1) 검역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지시 가능

가) 해당 검역소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이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1)의 '나'의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지시서로 이동 지시

라.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1)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 가능

*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 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음. '나. 소독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오염운송수단 소독 절차를 이행해야 함

2) 운송수단의 이동금지 통보 방법

운송수단의 장 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 발급

* 항공기의 경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선 통보와 서면 통보 병행

3) 오염 운송수단과 그 주변 통제

통제 기간, 통제 사유 등이 표시된 붙임 제6호서식에 따른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하여 검역관 등 관계자 이외 타인의 접근 통제

4)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운송수단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함

5)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 해제 및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 통보

가)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나)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라)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마. 회항 지시

1)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2) 회항 지시 후 회항 조치 시간

가) 운송수단의 차항지가 있는 경우 즉시 회항하여야 함

나) 운송수단의 차항지가 미정인 경우 해상정박 후 24시간 이내 차항지를 결정하고 회항하여야 함

다) 기상악화, 운송수단의 고장, 기상 악화 등으로 즉시 회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검역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필요

3) 회항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역법」 제39조 (벌칙)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조치 통보

* 「검역법」 제39조(벌칙)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2-8

검역증 발급(법 제22조, 제23조)

1. 검역증 발급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검역증을 발급

2. 조건부 검역증 발급

검역조사 결과 검역 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조건부 검역증 발급 가능

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는 검역소장이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하고, 운송수단의 장은 기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

나.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 가능

【 조건부 검역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시행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 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 기타 재검역(자체 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사환자의 재설문 등)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
-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중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선박

2-9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법 제24조)

1.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가. 검역감염병 환자 등

나. 검역감염병 접촉자

다.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라.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2. 검역소장은 출국,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대상자가 발생하면 요청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사유를 기재하여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에 즉시 보고

*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등 해당 감염병 대응부서)와 협의

2-10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법 제25조)

1. 국내로 시체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

가.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아래 참조)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함

나. 서류 검토 결과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붙임 제8호서식에 따른 검역확인서 발급

다. 서류 검토 결과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체, 유골* 및 유물을 보관 중인 터미널, 창고 또는 선박 내 별도 장소 등에서 현장 검역**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시 붙임 제8호서식에 따른 검역확인서 발급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사리포함)로 처리한 형태를 말함

** 방부처리, 관의 불침투성 여부 및 관의 밀봉상태 등을 확인

※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유골의 경우 현장 검역 시행, 서류 제출 불요

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항공검역일지관리(공항) 또는 승선검역일지관리(항만)에서 해당 운송수단명 선택

→ 유해검역 탭 → 사망자 인적사항 등록* → 저장

*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감염병명 기재

【 시체 반입 시 제출서류 】

1. 검역신청서(붙임 제7호서식)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4.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제5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사망자의 신원확인 관련 서류
- * 2~3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서류 제출,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원본을 확인하였으면 사본으로 제출 가능
- ※ 화장 조치 완료 시 서류 제출 불요

2. 운송수단의 운행 중 시체가 발생한 경우

- 가.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라 검역조사 후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법 제15조에 따라 검역조치 시행

※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는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서류확인 결과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접촉자 관리 조치 및 해당 시체 화장 권고

- 다.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검역증(별지 제18호) 또는 조건부 검역증(별지 제19호)을 발급

- 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항공검역일지관리(공항) 또는 승선검역일지관리(항만)에서 해당 운송수단 선택 → 유해검역 탭 → 사망자 인적사항 등록* → 저장

*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감염병명 기재

3. 반입 요건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불허



Q. 해외에서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은 화장하였으나 사망자의 유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 검역 절차는?

* 항공화물 뿐 아니라 기내 반입 수화물 등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종류의 유품

A. 불침투성 재질로 밀봉한 후 국내 반입, 검역관은 제출서류 확인 후 붙임 제8호서식에 따른 검역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사망자에 대한 검역신청서(붙임 제7호서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화물 운송 때),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 신원확인 서류

4. 해부 명령

검역소장은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질병관리청장'을 '검역소장'으로 봄)

5. 시신의 장사 방법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시신의 장사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질병관리청장’을 ‘검역소장’으로 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0조(해부 명령) 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나)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앞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하여야 한다.

라)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시신의 장사 방법 등) 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1 협조의 요청 및 현황 보고

1. 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법 제15조제5항, 시행령 제4조)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 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감시정의 사용
-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 등 이송 수단의 사용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의 확보
- 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검역 조치를 위한 그 밖에 검역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
- 마.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입국자 검역조치 현황 보고

- 가. 주요 감염병(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검역관리지역등 입국자 검역 조치
 - 1) 보고내용 : 주요 감염병(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검역관리지역등 입국자 (제3국 경유 입국자 포함) 검역 조치 현황
 - 2) 보고 방법 : 붙임 제31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매주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에 보고
- 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 관리지역 등 입국자 검역 조치
 - 1) 유행 절기 동안 검역 관리지역 등 입국자 중 호흡기 유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강화 및 검역 조치 현황 보고
 - 2) 보고 방법 : 붙임 제32호서식 및 붙임 제32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에 보고

다. 해외(신종) 감염병 지속 발생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큰 경우

1) 보고내용 : 해외(신종)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검역 조치 현황

2) 보고 방법 : 붙임 제33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정해진 보고일시 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에 보고

라.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등 입국자 검역 조치

1) 보고내용 : 행사 참가자 등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등 입국자 검역 조치 현황

2) 보고 방법 : 붙임 제34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정해진 보고일시 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에 보고

마. ‘가’ ~ ‘라’의 세부 사항 및 시행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메모 보고 또는 공문
요청에 따름

제3장

감염병 예방업무

- 3-1. 국제공인예방접종 사업
- 3-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
- 3-3. 검역 정보 안내

제3장 감염병 예방업무

3-1 국제공인예방접종 사업(법 제28조의2)

※ 국제공인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운영 가이드」 참고

1. 대상 : 황열, 콜레라

2.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신청(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3.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을 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함

*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 실시기관 지정

가. 증명서 발급번호 기재

증명서 발급번호 체계 : 발급기관 고유 코드 3자리, 해당연도 2자리, 발급순서 번호 5자리

◦ 고유 코드 : 국립중앙의료원(NMC), 충남대학교병원(CNU), 분당서울 대학교병원(SNU), 국립울산검역소(USQ), 국립부산검역소(PSQ) 등

(예) NMC2300001('23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접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명서 번호)

나. 소지인(이름) : 여권상의 영문명(full name)과 동일하게 작성

다. 성별 : 남성일 경우 M 또는 Male, 여성일 경우 F 또는 Female

라. 생년월일 : 일(숫자), 월(영어의 약어), 년(숫자)으로 작성

(예) 2023년 1월 1일 : 1. JAN. 2023

※ Jan(1월), Feb(2월), Mar(3월), Apr(4월), May(5월), Jun(6월), Jul(7월), Aug(8월), Sep(9월),
Oct(10월), Nov(11월), Dec(12월)

마. 국 적 : 신청인의 국적 작성 (예: 한국일 경우 Korea)

바. 서 명 : 여권과 동일한 접종 신청인 자필 서명

사. 접종명 : 황열 접종 시 Yellow fever, 콜레라 접종 시 Cholera

아. 일 자 : 접종 일자를 일(숫자), 월(영어의 약어), 년(숫자)으로 작성

자. 담당 의료인의 직급과 서명 : 예방접종 담당 의료인의 이름을 영문 자필로 기재

◦ 지정기관의 경우 의사(Dr.),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Quarantine officer), 또는
의사(Dr.)

차. 제조번호 : 백신 로트 번호 작성

카. 유효일

1) 황 열(주사제) : 예방접종 일자 10일 이후부터 평생

(예) 2023.1.1. 접종한 경우, 11.JAN.2023 ~ life of person vaccinated

2) 콜레라(듀코랄)

가) 6세 이상 소아와 성인

◦ 기초투여 : 최소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투여

- 기초투여 1차 : 투여일의 일주일 이후부터 5주간 유효

(예) 2023.1.1.에 1차 투여한 경우 2023.1.8.~2023.2.11. 유효

- 기초투여 2차 : 투여일부터 2년간 유효

(예) 2023.1.15.에 2차 투여한 경우 2023.1.15.~2025.1.14 유효

- 추가투여 : 기초투여 후 2년 이내 1회 추가투여 시 투여일부터 2년간 유효
 - 2년마다 추가투여 가능

(예) 2025.1.14에 추가 투여한 경우 2025.1.14~2027.1.13. 유효

나) 2~5세 이하 소아

- 기초투여 : 최소 1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투여(투여 간격이 6주가 경과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간격)
- 추가투여 : 지속적인 면역을 위해서는 기초투여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투여

* 이외 투약 및 의약품 관련 정보는 의약품 설명서 참조

3) 콜레라(유비콜플러스)

가) 1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

- 기초 투여 : 2주일 간격으로 2회 투여
 - 기초투여 1차 : 1차 접종 후 증명서 발급 불가, 접종확인서로 대체
 - ※ 1차 접종 후 6개월 내 재접종 시 3년 동안 항체 형성
 - ※ 1차 접종 후 항체형성에 대한 연구 결과 없음
 - 기초투여 2차 : 접종 후 2주 후부터 3년간 유효

(예) 2023.3.15.에 2차 투여한 경우 2023.3.29.~2026.3.28. 까지 유효

- 추가 투여 : 기초투여 후 3년 이내 1회 추가투여 시 접종 후 2주 후부터 3년간 유효

(예) 2026.12.31에 추가투여한 경우 2026.12.31.~2029.12.30. 유효

※ 자세한 사항은 제조사의 백신설명서 참조

타.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

[별지 제37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



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가. 대상

인적 사항의 변경 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민원인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나. 발급기관

- 1) 검역소
- 2)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해당 지정기관에서 접종한 경우)

다. 접수 및 처리 절차: 재발급 신청(현장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발급내용 확인 → 증명서 재발급

* (검역소)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을 이용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 후 발급.

라. 제출 및 제시서류

- 1) 현장신청 제출서류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붙임 제14호서식) 1부

나)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의 경우 제외)

다) 성명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위임장(대리인 발급 시)

2) 현장신청 제시서류

가) 여권 또는 여권 사본

나) 신분증 사본(대리인)

3)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 인증서(공동·금융·간편) 로그인

* 내국인(성인)에 한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현장신청 필요

나) 방문 또는 우편수령 선택(우편수령 선택시 수입인지 첨부)

* 우편수령 선택시 우편비용 선결제, 수입인지(재발급 수수료) 첨부 확인

마. 재발급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5. 증인 날인(시행규칙 제25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 날인

6.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제2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반영구 보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민원사무 처리부로 대체 가능

7.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등(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따름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 이미 발급된 증명서에 추가 투약 사항을 기재할 시 수수료 면제

* 예방 백신접종 면제 확인서를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에 부착하여 발급할 때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만 부과

2)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 백신료와 접종 비용

가) 백신료는 실비로 하며 질병관리청이 구매하여 배분한 백신을 사용한 경우, 수입인지로 징수한다.

◦ 백신료 :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백신의 경우, 해당 지정기관에서 구매한 비용으로 징수(현금, 카드 등)

* 백신료 단가가 변경되면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에서 질병대응센터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 변경 금액을 문서로 통보

나)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접종 비용 : 질병관리청 공고 (예방접종비용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25.1.2. 기준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예방접종 시행 비용* 으로, 민원인이 지정기관에 지불(현금, 카드 등)한다.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질병관리청장이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8.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지정 등(법 제28조의3, 시행규칙 제24조)

가. 자격 및 지정절차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명의 예진의,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구비 가능한 의료기관

- 2) '가)'의 자격을 갖춘 기관의 장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담당 의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질병대응센터에 신청

*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자격증 확인

** 예방접종 담당 의사 변경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3) 질병대응센터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정기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에 결과 보고

- 4)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은 질병대응센터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나. 백신 보관·관리

- 1) 백신 수령 시 백신명, 인수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확인하고 백신 전용 냉장고(2~8℃)에 보관

- 2) 백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에 신속하게 조치·보고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 참조

- 3) 백신의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폐기 사유 발생 확인 시 관할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에 지체없이 서면보고

* 유효기한 경과로 폐기한 백신은 폐기 당시 백신료로 환산하여 국가에 지불

- 4) 붙임 제30호서식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 백신 수급 현황을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에게 매월 5일 이내 서면보고

다. 기타 이행사항

1) 증명서 발급

-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한 검역소로부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을 배부받아 접종자 정보와 접종내용을 작성하고 증인 날인 후 현장 발급

*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서식 소요량 파악 후 지정기관에 배부

2) 발급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및 현황 제출

-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은 월 단위로 접수한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신청서 원본과 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번호가 포함된 접종자 현황 등을 관할 검역소에 제출

3)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지도·감독

- 가) 질병대응센터장은 연 1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백신 관리, 증명서 발급 적정성 등을 점검

- 나) 질병대응센터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이 새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간 분기별로 해당 지정기관의 백신 보관상태 및 접종 현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주요 점검 사항〉

증명서 발급관리	통계관리	• 월별 증명서 발급현황 • 접종자 내역 • 통계일지 여부
	증명서 수불 대장 관리	• 증명서 수불대장 적정 작성 여부
	증명서 발급신청서 관리	• 발급신청서 적정 관리 여부 • 수입인지 적정관리 여부
백신 냉장고 관리	온도기록관리	• 온도기록 데이터 확인 • 보관장 비 관리대장
지정기관 관리	지정기관 관리	• 예진의사의 의사면허번호 또는 재직증명서 확인

다) 질병대응센터장은 질병관리청과 검역소에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 조치

※ 질병관리청장이 잦은 백신 폐기 등의 사유로 지정기관 지도·감독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질병대응센터장은 이에 따라 지도·감독 시행

4) 기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 권역 질병대응센터장, 관할검역소장, 지정기관장의 상호 협의로 결정

〈업무 흐름도〉

◦ 관할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지정 기관으로 송부



◦ (민원인) 지정기관 방문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별지 제31호서식
◦ 예방접종 사전점검표 작성
- 붙임 제11호서식 또는 붙임 제12호서식



◦ (민원인) 수입인지 구입
* 발급신청서에 수입인지 첨부



◦ 의사 진료



◦ 예방접종



◦ 지정기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자체 증명서 발급 대장 등 작성



◦ 지정기관은 매월 국제공인예방접종 발급 신청서 및 접종자 현황, 접종자 내역(엑셀 형태)를 소관 검역소에 송부
◦ 검역소는 지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접종 내용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질병대응센터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 기관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예방접종 면제자



◦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붙임 제13호서식 발급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작성·발급

3-2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법 제29조)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위임〉

- 법 제29조 및 제37조, 시행령 제7조 -

□ 질병대응센터장에 위임한 권한

-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법 제29조제1항 제3호)
-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식품 및 식수 검사(법 제29조제1항제4호)
-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법 제29조제1항제6호)
-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법 제29조 제1항제7호)

□ 검역소장에 위임한 권한

-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법 제29조제1항제1호)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법 제29조제1항제2호)
- 예방접종(법 제29조제1항제3호)
-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법 제29조제1항제5호)
- 그 밖에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법 제29조제1항제8호)

1.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유증상자가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검역소장은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등을 기반으로 역학조사 실시

가. 조사 시기 : 검역구역 내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확인 즉시

*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신고 포함

나. 조사 방법

- 1)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등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 2) 검체 채취

다. 조치 보고 :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름

2.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가.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 선정

- 검역소장은 방역사업계획 수립 전 관할 보건소장 및 공항만 시설운영자 등과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공·항만(부두) 주변 환경과 질병대응센터의 매개체 서식 분포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 선정

나. 소독 기간 : 4~10월(검역소, 주 1회 이상)

* 검역소장은 지역별 기후 및 검역구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기간 조정 가능

다. 소독 방법 : 살충 및 살균소독

라. 실시요령

- 1) 취약지역 살충 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 대상 지역에 초미립자(ULV) 소독을 시행
- 2)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 조치

- 3) 검역구역 내 소독을 보건소, 항만(공항) 공사, 항만(공항)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독업무대행자 등이 실시할 경우 소독시행 현황 등에 대해 월 1회 확인

* 단, 소독시행 주체에 따라 확인 주기 및 방법 등 조정 가능

*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 관계기관(자)의 소독시행 현황 지도 및 점검 가능
(붙임 제15호서식에 따른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참조)

마. 방역 약품·약제 선정 및 사용

- 1)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살균·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 해충에 맞는 살균·살충제 사용
- 2) 약제별 표준 희석 배수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의 희석·배합을 배제함으로써 살충 효과를 높이며, 구제 대상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해 성분별 순환 교대식으로 사용
- 3) 방역 약품의 선정 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토하여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3. 위생지도 및 관련 교육·홍보

가. 기간 : 연중(분기 1회 이상)

나. 대상 업소 :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조치 대상자에게 조치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함(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

다. 내용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4. 기타

가. 질병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 필요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보건소 주관 시 정보공유

- 1) 대상기관: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 대리점, 관련 여행사, 병원, 약국, 식품접객업소 등
- 2) 모니터링 기간
 - 가) 평시: 월 1회 이상
 - 나) 비상 방역 기간(5~9월): 주 1회 이상
- 3) 신고대상
 - 가)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 나) 급성 열성질환 증상자(37.5℃ 이상 발열자)
 - 다) 급성설사(의사) 환자(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 4) 선정 방법
 - 가) 검역소장은 환자 또는 유증상자의 신고 등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
 - 나)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제
- 5) 운영 방법
 - 가)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모니터링제의 운영 취지·환자 발생에 따른 신고요령, 비상 연락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 (대상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 나) 검역소장은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필요시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 다) 해당 기관 방문 또는 유선 등 대상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요령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라) 필요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음

6) 모니터링 결과 조치 및 결과 보고

- ‘제2장 검역조사’ > ‘2-7 검역조치’에 준하여 실시

7)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신고 시 업무절차

-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신고 접수



- 질병관리청에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보고
 - 설사 환자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증상자(검역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급성호흡기질환 유증상자(검역정책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검역관/공중보건 의사/역학조사관 역학조사



- 검체 채취
 - 설사 환자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증상자 : 직장도말 또는 채변
 - 급성호흡기질환 유증상자 : 인후(상기도) 도말 또는 객담
 - 기타 감염병 진단에 필요한 검체
- 보건교육
 -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 안내



-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병원체 검출 결과 보고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검출 시(검역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호흡기 검역감염병 검출 시(검역정책과, 신종감염병대응과, 호흡기감염병 T/F)
- * ‘제2장 검역조사’ > 2-7. 검역조치’에 준하여 보고
- 해당 시·도(시군구)에 명단 및 검사 결과 통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역학조사
 - 환자/접촉자 관리
 - 감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 치료/격리

나. 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운영

- 1) 기간 : 연중(반기 1회 이상)
- 2) 대상 : 관내 관계기관 등
- 3) 내용
 - 가) 감염병 발생 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 나) 유사시 공동방역 대책 협의
 - 다) 관계기관 업무체계 구축 등

다.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 1) WHO, CDC 등을 통한 해외 감염병 발생 확인 및 정보제공
- 2)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를 질병정보 모니터링 대상기관 등에 제공하여 해당 지역 여행·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3)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병원체 확인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 4) 검역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축제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라. SMS를 통한 해외 여행력 정보 수집 및 처리 알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국자 대상으로 건강 관련 정보, 개인 식별 정보 처리 등 안내 (참고7)

【SMS 안내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 방문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 동 문자는 여권 발급 시 기준으로 발송될 수 있어 해외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자 수신이 될 수 있음을 양해바라며, 이러한 경우 ☎1339로 연락해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마. 공항만 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

검역구역 내 해외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선제적 인지 및 대응을 위해 전국 공항만 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 1) 대상 병원체 : 콜레라,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엡폭스, 인플루엔자(A,B), 코로나19

* 단, 대상 병원체는 추가 또는 제외 가능

2) 조사 방법

가)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 검사 : 공항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하수처리장 및 항만 하수 합류 지점 등을 대상으로 병원체 감시 수행

* 공항 8지점, 여객터미널 6지점, 항만 4지점

나) 운송수단(항공기 및 선박) 오수 검사 : 국제공항 입항 항공기 및 외항선 대상 오수 감시 수행

3) 업무 수행기관

가)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 검역정책과

나) 예산 확보 및 배정 : 검역정책과

다) 오하수 채취 및 이송 : 13개 검역소

라) 오하수 내 병원체 검출 : 권역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마) 유전자 분석 : 신종병원체분석과(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고위험병원체 분석과(엡폭스)

바) 결과 종합 분석 및 공유 : 검역정책과

[참고] 질병대응센터 주관·검역소 협력 업무

1.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감시

가.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1) 주요내용

가) 모기종별 분포 및 밀도 분석

나) 플라비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감염 검사

2) 수행 방법

가) 모기채집 : 유문등, BG 트랩 등 모기 채집기를 이용하여 채집

나) 검사 항목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뎅기열, 황열, 치쿤구니아열 원인 바이러스

3) 업무 수행기관

가)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나) 모기 채집 : 13개소 국립검역소

다) 검체 분류 동정 및 검사 분석: 권역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라) 결과 종합 분석 및 보고: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4) 플라비 바이러스 및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양성 검출 시

가) 권역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검역정책과, 매개체 분석과에 결과 보고 및 해당 검역소에 검사 결과 통보

나) 검역소는 관할 시·군·구에 검사 결과 통보 및 업무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방역소독 강화 요청

나. 바퀴 및 쥐 서식 여부 조사

1) 바퀴벌레

가) 조사 기간 : 필요시

나) 조사 방법

(1) Pit-fall trap 및 끈끈이 트랩으로 월 1회 바퀴벌레 채집

(2) 미분류 건은 매개체분석과로 보내 결과 회신

다) 조사지점

(1) 해외 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2)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역

2) 쥐

가) 조사 기간 : 필요시

나) 조사 방법

(1) 생포용 쥐덫을 활용하여 쥐를 채집

(2) 혈액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혈액 채취 후 병원체 (페스트 등) 검사

다) 조사 지점

(1) 해외 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

(2)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역

라) 검사 수행

(1) 권역 질병대응센터

◦ 병원체(페스트 등) 검사

◦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결과 통보

(2) 검역소

- 권역 질병대응센터로 병원체(페스트 등) 검사 의뢰(혈액채취 후, 즉시 냉장 택배로 의뢰)

다. 매개체 방제

- 1)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권역질병대응센터장은 관할 검역소 및 보건소 등에 매개체 채집정보를 월 1회 제공

* 검역소는 권역 질병대응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매개체 채집정보를 활용하여 관할 보건소와 공항·항만시설 관리자 등과 업무협업체 개최 등을 통해 방역소독 강화 요청

- 2)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 반영

라. 권역질병대응센터장은 검역소별 특수성을 고려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감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단, 모기종별 분포·밀도 분석 및 플라비 바이러스 및 치쿤구니야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 관한 사항은 경남권 질병대응센터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매개체분석과) 보고 시행

2.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가. 조사 대상

- 1) 승선 검역대상 선박 중, 콜레라 검역관리지역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환·주입 하고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 제외

- 2)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 중 관할 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박평형수 콜레라균 검사를 의뢰한 선박

※ 조치 대상자에게 조치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함(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

나. 조사 방법 : 권역 질병대응센터에서 선박평형수 세균 검사 실시

- 1) (검역소)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이 승선 검역 대상일 경우 원활한 시료 채취를 위해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 및 해운대리점에 직원 협조 요청
- 2) (질병대응센터) 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의 선박평형수 검사 의뢰에 따른 검사수행

다. 검사 항목 : 콜레라균(독소형 O1 또는 O139)

라. 검사 결과 콜레라균(독소형 O1 또는 O139)이 검출되었을 때 조치사항

- 1) (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세균분석과) 보고 및 관할 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통보

*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보고

- 2) (검역소) 선장 또는 선사·해운대리점 등에 즉시 병원균 검출 결과 통보

3.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가. 조사 대상

- 1) 병원체 : 콜레라(독소형 O1 또는 O139),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 2) 환경 인자 : 기온, 수온, 염도, 탁도, pH

나. 업무 수행기관

- 1)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 2) 예산 확보 및 배정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분석과
- 3) 해수 채취 : 11개 검역소, 2개 보건환경연구원
- 4) 해수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확인 동정 및 균주 분리: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2개 보건환경연구원

5) 결과 종합 분석 및 보고 :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검역소 관할 질병대응센터〉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호남권 지역대응센터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 인천공항검역소 ◦ 인천검역소 ◦ 동해검역소	◦ 평택검역소 ◦ 군산검역소	◦ 목포검역소 ◦ 여수검역소 ◦ 제주검역소	◦ 포항검역소 ◦ 울산검역소	◦ 부산검역소 ◦ 마산검역소 ◦ 김해공항검역소

3-3 검역 정보 안내

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가. 공항 또는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름

- 1)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 포함)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 2)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방송할 것

나. 검역소장은 '1) ~ 2)'에 따른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관리자에게 구체적인 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출입국자에 대한 안내

가. 검역소장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요청

-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법
-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 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나. 검역소장은 '1) ~ 6)'까지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운송수단의 장에게 제공

3. 검역소장은 시설관리자 및 운송수단의 장이 시설 이용자와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안내 또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제4장

검역공무원

4-1. 검역공무원(권한과 자격)

4-2. 검역선 등의 운용

4-3. 검역공무원의 제복

제4장 검역공무원

4-1 검역공무원(법 제30조, 제31조)

1. 검역공무원(법 제30조)

- 가. 검역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
- 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2. 검역공무원의 권한(법 제31조)

- 가. 검역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조사할 수 있음
- 나.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3.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시행규칙 제26조)

- 가. 검역관 :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역실무기본과정’, ‘검역실무심화과정’, ‘검역관역량강화과정’ 등

나.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 :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검역법, 검역업무지침, 개인보호장비 및 검역 현장 실습 등 포함)*을 이수해야 함

*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검역실무기본과정’, ‘검역실무 심화과정’, ‘검역관역량강화과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 검역소는 검역 관련 자체 외국어 교육계획(집합, 개인)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4. 훈련

가.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훈련 및 토의(도상)훈련 시행

나. 훈련 계획 및 결과를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및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에 보고

* 권역 단위 훈련으로 진행하는 경우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에서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로 보고

4-2 검역선 등의 운용(법 제32조)

1. 검역선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2. 검역 차량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 지침」에 따름

*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 지침」제정·시행(검역지원과, 2017.7.1.)

4-3

검역공무원의 제복(법 제33조)

1. 검역공무원(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국립검역소 소속 공무원)은 검역법에 규정된 직무 수행 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검역공무원증)를 지니고 다녀야 함

* 검역공무원은 검역 업무 수행 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검역 업무의 활동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에 맞는 안전모, 안전화 등은 필요시 검역소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

2. 근무 장소 등에 따른 제복 착용

가. 정장

-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 참석 시
-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경우

나. 근무장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경우

다. 기동장

-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3. 제복의 착용 시기(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착용 시기
하복	여름철(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	겨울철(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5장

행정사항

- 5-1. 증명서 발급
- 5-2. 벌칙과 과태료
- 5-3. 기타

제5장 행정사항

5-1 증명서 발급(법 제27조, 제28조)

1. 선박위생 (면제)증명서 발급

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는 검역법 제10조(검역 장소)의 검역 장소, 검역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이 도착한 장소 관할 검역소에 선박 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 제출서류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나. 해당 선박에 대해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 실시

*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및 참고1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 참고

다.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1) '나.'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는 경우 : 소독대행업자에게 소독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나)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 : 6개월간 유효한 선박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 절차

제3장

예감염병
예방

제4장

검역
면제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벌칙

제7장

참고

- 2)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독 명령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 ‘나.’의 검사 후 합격 시 6개월간 유효한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 3)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위생 검사 수수료를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
- 4) 재발급 신청 및 발급은 ‘3.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발급’에 따름

라.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로 돌아가거나 적절한 검역조사 및 검역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기상악화, 선박 고장, 안전사고 등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6개월(연장한 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최대 7개월)

- 1) 제출 서류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기존 선박 위생관리(면제)증명서
- 2) 신청기한 및 연장 기간 :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능하며,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3) 제출서류 확인 후 기존 증명서에 1개월 연장 허가 날인*
* 연장 허가 도장(참고8) 및 별지 제36호 기관 증인 날인
- 4) 민원처리 결과를 제37호서식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연장신청 민원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마.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 시행

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작성 방법

- 1) 증명서 발급번호 기재

예시) 국립부산검역소(PSQ2300001), 국립울산검역소(USQ2300001), 국립포항검역소 (PHQ2300001) 등

신 청	⇒ • 선장, 선박의 소유자, 해운대리점이 별지 제22호서식 및 제23호서식에 따라 제출 (선박이 도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신청)
접 수	⇒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초일,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2.(금)에 접수한 경우, 2.6.(화) 오후 6시 전까지 증명서 발급 처리 완료
위생 검사	⇒ • 검역소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 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시행 * 참고 1번 선박 위생관리 점검표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
발 급	⇒ • 위생 검사 점검 결과에 따른 선박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 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 *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휴일·토요일 발급 가능)
기타 사항	⇒ • 선박 위생 검사 실시 결과 및 증명서 발급 결과를 붙임 제9호서식에 따른 선박 위생 증명서 발급기록부 및 민원처리부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부 및 「검역업무지침」 붙임 제9호서식 선박 위생 증명서 발급기록부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의 〈증명서 발급관리〉 및 〈민원증명서 신청관리〉로 대신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업무

제3장

예감
방역
업무

제4장

검역
공무원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2. 그 밖의 증명서 발급

가. 신청 및 수수료

- 1)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조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

- 2) 검역 조치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은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름

나. 증명서 발급

- 1)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
- 2)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을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소독증명확인서 발급
- 3)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발급
- 4) 사람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 승객이나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발급
- 5)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이 소독 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시행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소독증명서 발급
- 6)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 검역조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붙임 제17호서식에 따른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발급
- 7) 그 밖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소독업무 대행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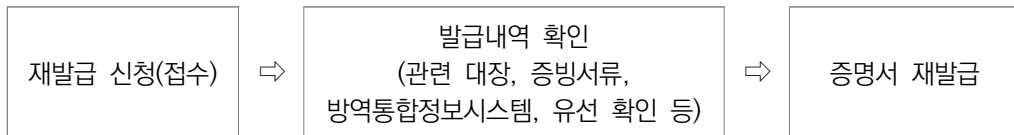
3.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발급

가. 재발급 대상

- 1)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 2) 발급받은 증명서가 훼손된 경우
- 3) 운송수단의 이름, 국적, 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재발급 가능, 국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경우 검역조사 대상(증명서 미소지로 간주)

나. 접수·처리 절차



* Fax를 통해 이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제출했던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 관련 서류 수신

다. 처리 기간: 즉시

라. 구비서류

- 1) 붙임 제18호서식 검역 관련 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1부
- 2)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 및 국내 항에서 발급받아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재발급 수수료: 1,000원(시행규칙 제29조)

바. 재발급 증명서 기재요령

- 1) 일시(연월일) 등: 기 발급 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 2) 발급기관 관련 기재 및 증인란: 재발급 검역소 기재 및 증인 날인

4. 증인 날인

검역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증인 날인

5-2

벌칙과 과태료(법 제39조, 제41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라.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마.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시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나.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 다.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과태료 부과기준

가. 일반기준

1) 부과권자(검역소장)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과권자(검역소장)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가)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소장
부과

제3장

예감
방역
부

제4장

공검
무원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200만원
나.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700만원
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200만원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100만원
마. 격리대상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4호	100만원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 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700만원
아. 운송수단의 장이 법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교육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200만원

다. 참고사항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3)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5.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절차

부과 절차*	세부 내용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16조)	- 법 제41조에 따른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 제공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제17조)	-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전자문서 가능) - 위반행위, 과태료 액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참고)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8조)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가능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제19조)	- 법 제41조에 따른 질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불가 다만, 재판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정정부과 가능
이의제기 (제20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법원への 통보 (제21조)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4조)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과태료 부과 절차별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조항 : 부과 절차 구분 하단의 ‘()’ 참조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 위반행위

제3장

예감명령
부과

제4장

징수
원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제7장

참고

5-3

기타

1.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시행령 제8조)

다음 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가.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의 검역 조치에 관한 사무
- 나. 법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한 사무
- 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라.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 조치에 관한 사무
- 마. 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 바. 법 제25조에 따른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에 관한 사무
- 사.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사무
- 아. 제28조의2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사무
- 자.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에 관한 사무

2. 검역조사서의 작성 및 보관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승선·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 붙임 제28호서식인 검역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관(5년)해야 함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 : 2개월

3. 검역대

검역소장은 검역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제21호서식에 따른 검역대 사양을 참고하여 설치

제6장

붙임

- [붙임1] 허가필
- [붙임2]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 대장
- [붙임3]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 [붙임4]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국문·영문·중문)
- [붙임4의2]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국문·영문·중문)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국문·영문·중문)
- [붙임6] 접근금지 표지판
- [붙임7] 검역신청서(시체 등 반입 요청)
- [붙임8] 검역확인서(시체 등 반입 허용)
- [붙임9]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기록부
- [붙임10]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점검표
- [붙임11]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국문·영문)
- [붙임12]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국문·영문)
- [붙임13]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 [붙임1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붙임15]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 [붙임16] 삭제
- [붙임17]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 [붙임18] 검역관련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 [붙임19] 수입고철소독계획서
- [붙임20] 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 [붙임21] 검역대 사양
- [붙임22]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
- [붙임23]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
- [붙임24]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 [붙임25]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 [붙임26] 검역 서류심사 결과통보서
- [붙임27-1] 검역조사 결과통보서(선박용)
- [붙임27-2] 검역조사 결과통보서(항공기용)
- [붙임28] 검역조사서
- [붙임29]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
- [붙임30]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
- [붙임31] ○○○(감염병명) 검역관리지역별 검역조치 현황
- [붙임3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현황 조사표
- [붙임32의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호흡기 유증상자 진단감시 결과표
- [붙임33] 검역 일일상황 보고
- [붙임34] ○○(국제행사명) 관련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 현황(국립○○검역소)
- [붙임35] 검체의뢰서
- [붙임36]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이용자 관리대장
- [붙임37]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연장신청 민원처리 대장
- [붙임38] 승무원·승객 체온체크 결과지
- [붙임39]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접촉자 통합 조사서

[붙임 제1호서식]

허 가 필		1cm
• 허가번호 : 제2000-000000호 • 선 명 : • 허가 기간 :		3cm
국립00검역소장	직인	2cm

10cm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요구사항

제3장

예감방법
부속

제4장

검역
공무원
면역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붙임 제2호서식]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발급 대장

[illegible]

[붙임 제3호서식]

건강 확인서(Health Statement)

☐ 선 명(Name of Vessel) :

☐ 승객 및 승무원의 수(Number of Passengers and Crew) :

선내 모든 승객, 승무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환자 발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all passengers and crew are health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re are also no unusual signs of illness on board.

☐ 환자 발생 시 작성해주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there is any patient present on board.)

성 명(Name)	나 이(Age)	추정병명(Impression)

* 다수의 인원이 동일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발생 인원 및 추정병명만 기록하세요.

(Please fill in the blanks when several people have the same symptoms.)

발생 인원(Number of Patients)	추정병명(Impression)

* 환자 발생 시에는 환자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세요.

(Please distribute the health questionnaire when there are any patients present on board.)

년 월 일(yyyy mm dd) :

선의 서명(Ship's Medical Doctor) :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붙임 제4호서식]

유증상자 통합조사·분류표

조사자	소속:		조사일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				

1. 기초조사						
입국일시		편명/선명			좌석번호	
이름	성	이름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주소					직업(직장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기초조사의 인적 사항은 '건강상태질문서'의 인적 사항으로 같음할 수 있음

2. 여행력						
최근 21일 동안의 여행력 (경유국 포함)	국 가	도 시	체류 기간		경유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여행 목적 ☐ 여행 ☐ 업무(출장) ☐ 해외근무 ☐ 해외거주자 ☐ 기타()						

3. 임상 증상(최근 21일 이내 발생 증상)				
최초 증상 발생일	____년 ____월 ____일		최초 발생 증상	
증상 대분류	☐ 전신 증상	☐ 호흡기 증상	☐ 위장관 증상	☐ 기타 증상
증상 세분류 * 첫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모든 증상 기재	☐ 발열(℃)	☐ 기침	☐ 설사	☐ 발진
	☐ 오한	☐ 인후통	☐ 오심	☐ 황달
	☐ 근육 및 관절통	☐ 가래	☐ 구토	☐ 마비/경련
	☐ 무기력	☐ 객혈	☐ 복통	☐ 피부·결막 출혈
		☐ 흉통	☐ 탈수	☐ 림프절부종
		☐ 호흡곤란		☐ 기타:
약물복용 여부	☐ 예(약물명:)		☐ 예(방문 사유:)	
	- 마지막 복용일시(월 일 시)		- 방문일시(월 일 시)	
	☐ 아니요		☐ 아니요	

[붙임 제4호서식(영어)]

Comprehensive Survey and Classification of Persons with Symptom

Investigator	Affiliation:			Inspection date	(month/day/year)	
	Name:	Contact:				
1. Basic Investigation						
Date of Entry		Flight/Vessel Name		Seat No.		
Name		Last Name	First Name	Nationality	Identification No. (Foreign Registration No., or Passport No.)	
Date of Birth		(month/day/year)			Gender	☐ M ☐ F
Address					Occupation (Name of Workplace)	
Contact	Tel.					
	E-mail					

*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asic Investigation can be substituted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Health Status Questionnaire.'

2. Travel History					
Travel history within the last 21 days (including transit countries)	Country	City	Duration of Stay	Transit	Remark
			(month/day/year) - (month/day/year)		
			(month/day/year) - (month/day/year)		
			(month/day/year) - (month/day/year)		
			(month/day/year) - (month/day/year)		
Purpose of visit	☐ Travel ☐ Business ☐ Work overseas ☐ Overseas resident ☐ Others ()				

3. Clinical Symptoms					
Date of First Symptom Onset	(month/day/year)			Initial Symptoms	
Main Category of Symptoms	☐ General Symptoms	☐ Respiratory Symptoms	☐ Gastrointestinal Symptoms	☐ Other Symptoms	
Subcategory of Symptoms * List all symptoms developed after the first symptom onset	☐ Fever(°C)	☐ Cough	☐ Diarrhea	☐ Rash	
	☐ Chills	☐ Sore Throat	☐ Nausea	☐ Jaundice	
	☐ Muscle and Joint Pain	☐ Phlegm	☐ Vomiting	☐ Paralysis/Convulsions	
	☐ Fatigue	☐ Blood in Sputum	☐ Abdominal Pain	☐ Skin and Mucosal Hemorrhage	
		☐ Chest Pain	☐ Dehydration	☐ Lymph Node Swelling	
		☐ Difficulty Breathing		☐ Other:	
Medication Intake	☐ Yes (Name of Medication:) - Date and time of last medication intake (MM DD HH)		Visit to Local Medical Facilities	☐ Yes (Reason for Visit:) - Date and time of visit (MM DD HH)	
	☐ No			☐ No	

4. Risk Factors		
Contact with Animal, Vector	Have you had contact with animals (such as bats, camels, primates including chimpanzees, rodents, pigs, poultry, etc.) within 21 days from the first symptom onset? ☐ Yes ☐ No ☐ Unknown	
	- What type of animal did you come in contact with?	()
	- When did you come in contact?	(YY MM DD HH)
	- Where did the animal contact occur?	()
	Have you been bitten by mosquitoes or ticks, etc. within 21 days from the first symptom onset? ☐ Yes ☐ No ☐ Unknown	
- If you answered yes, which vector was it? ☐ Mosquitoes ☐ Ticks ☐ Other ()		
Dietary Intake	Have you consumed any undercooked food (such as seafood, meat, etc.) or untreated water (such as groundwater) within 21 days from the first symptom onset? ☐ Yes ☐ No ☐ Unknown	
	- What type of food or water did you consume?	()
	- When did you consume?	(YY MM DD HH)
	- Where did you consume this food or water?	()
Contact with Suspected Cases	Have you had any contact with individuals suspected or confirmed to have an infectious disease or with deceased individuals within 21 days from the first symptom onset? ☐ Yes ☐ No ☐ Unknown	
	- Which person did you come in contact with?	☐ Confirmed case (Name of diagnosis:) ☐ Suspected case (Symptom:) ☐ Others ()
	- When did you come in contact?	(YY MM DD HH)
Contact Information	Number of travel companions	☐ Persons
	Number of people sharing the same room (applicable for ships)	☐ Persons
	Number of travelers or room occupants (applicable for ships) with similar symptoms	☐ Persons
5. Conclusion and actions to be taken, etc.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Other opinions	Quarantine office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ficer or public health doctor	* In the case of infectious diseases in which the bas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 is not provided, indicate details such as the result of case classification and others in the section concerned
Actions to be taken	☐ Conduct bas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Transfer·Isolation (Place:) ☐ Health training ☐ Guidance on treatment in medical institutes	

※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be solely used for the agreed purposes, and the person who provided the personal information may request to access, correct, or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by conta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 According to Article 15, Paragraph 1, and Article 39 of the "Quarantine Act," individuals who are considered necessary to be checked for infectious diseases can be subjected to isolation, examination, or medical testing, and failure to comply with such directives can result in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붙임 제4호서식(중국어)]

有症状者综合调查·分类表

调查者	所属：		调查日期	年 月 日
	姓名：	联系方式：		

1. 基本调查

入境日期		航班号/船名		座位号	
姓名	姓	名	国籍	身份证号 (填写外国人登记 号码和护照号码)	
出生日期		年 月 日		性别	☐ 男 ☐ 女
地址				职业 (工作单位名称)	
联系方式	电话号码				
	电子邮箱地址				

* 基本调查中的个人信息可以用“健康状况调查表”中的个人信息代替

2. 旅行史

	国家	城市	滞留时间	经由	备注
最近21天 的旅行史 (包括过境)			年 月 日 ~ 年 月 日		
			年 月 日 ~ 年 月 日		
			年 月 日 ~ 年 月 日		
			年 月 日 ~ 年 月 日		
旅行目的	☐ 旅游 ☐ 公务(出差) ☐ 海外工作 ☐ 海外居住 ☐ 其他()				

3. 临床症状

最初症状发生日	年 月 日	首发症状	
症状分类	☐ 全身症状	☐ 呼吸道症状	☐ 胃肠道症状 ☐ 其他症状
症状细分 * 填写首次症状发生后出现的 所有症状	☐ 发烧(°C) ☐ 发冷 ☐ 肌肉及关节痛 ☐ 无力	☐ 咳嗽 ☐ 喉咙痛 ☐ 痰 ☐ 咯血 ☐ 胸痛 ☐ 呼吸困难	☐ 腹泻 ☐ 恶心 ☐ 呕吐 ☐ 腹痛 ☐ 脱水 ☐ 皮疹 ☐ 黄疸 ☐ 麻痹/痉挛 ☐ 皮肤结膜出血 ☐ 淋巴结水肿 ☐ 其他：
是否服用药物	☐ 是(药物名:) -最后一次服用时间(月 日 时) ☐ 否	是否到当地医疗机构就诊	☐ 是(就诊原因:) -就诊时间(月 日 时) ☐ 否

4 危险因素	
动物接触史	首次症状发生后的21天内是否接触过动物(蝙蝠、骆驼、黑猩猩等灵长类动物、老鼠等啮齿类动物、猪、鸡等家禽类)? ☐ 是 ☐ 否 ☐ 不知道
	- 您接触过哪些动物? ☐ 野生() ☐ 家畜()
	- 什么时候接触的? (年 月 日 时)
	- 您是在哪里接触到动物的? ()
	首次症状发生后的21天内您是否被蚊子或蜱虫等叮咬过? ☐ 是 ☐ 否 ☐ 不知道
食物摄入史	- 如果您上面回答的是“是”，那么是被什么叮咬过? ☐ 蚊子 ☐ 蜱虫 ☐ 其他()
	您在首次症状发生后的21天内是否食用过未煮熟的食物(海鲜、肉类等)或未净化的水(地下水等)? ☐ 是 ☐ 否 ☐ 不知道
	- 您摄入了什么类型的食物或水? ()
	- 什么时候摄入的? (年 月 日 时)
疑似患者等接触史	- 摄入或接触的场所在哪里? ()
	您在首次症状发生后的21天内是否接触过疑似传染病患者或死亡者? ☐ 是 ☐ 否 ☐ 不知道
	☐ 确诊患者(确诊病名:)
	- 您接触过哪些人? ☐ 疑似患者(症状:) ☐ 其他()
接触者现状	- 什么时候接触的? (年 月 日 时)
	随行旅客人数 ☐ 人
	同一客舱使用人数(适用于船舶) ☐ 人
	同一旅客、同一客舱(适用于船舶)内出现类似症状的患者人数 ☐ 人

5. 结论及措施事项等		
疑似传染病		
其他意见	检疫人员	
	流行病学调查员或公共保健医生	*未提供基础流行病学调查书的传染病, 在相应栏中填写病例分类结果等内容
措施事项	☐ 执行基础流行病学调查 ☐ 移送隔离(场所:) ☐ 卫生教育 ☐ 医疗机构诊疗说明	

※ 个人信息不会用于提供者同意内容以外的目的, 如果您不同意使用所提供的个人信息, 可以通过个人信息管理者要求查看, 更正或删除。

※ 根据《检疫法》第15条第1项及第39条规定, 对于认为有必要确认是否感染检疫传染病的人可以隔离, 诊断或检查, 如果不遵守, 可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下的罚款。

[붙임 제4의2호서식]

유증상자 조사표(2인 이상의 설사증상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단체현황

입국일시				편명/선명		출발지		
여행기간				여행사명 (단체명)		가이드/담당자 연락처		
여행일정	일 자			여 행 지				
탑승자 현 황	탑승인원(명)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통과 여객	단체여행객(명)		
	계	승무원	승객			총인원	증상	채변

2. 증상자현황

성명	증 상		설사양상	증상 발현일	증상발현 전 섭취음식	섭취 장소	약복용 및 병원 방문여부 (진단명)
	설사기간	설사횟수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설사·구토·복통·기침·발열 일	회	물설사·쌀뜨물 점액성·혈변				

3. 조치사항

- ☐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실시 후 귀가 조치
 ☐ 병원 안내
 ☐ 병원 후송
 ☐ 기타

[붙임 제4의2호서식(영어)]

Survey of Persons with Symptoms (for Two or More Persons with Diarrhea Symptoms)

Surveyor name:

Survey date:

1. Information of the tour group

Entry date				Flight no./ ship name			Departure point		
Travel period				Travel agency (group name)			Guide/ manager contact information		
Travel history	Date			Place visited					
Passenger information	No. of passengers			No. of passengers requested to complete a health condition questionnaire	No. of passed passengers	Group tourists (persons)			
	Total	Crew	Passengers			Total	Symptoms	Stool collection	

2. Information of persons with symptoms

Name	Symptoms		Type of diarrhea	Date of the onset of symptoms	Food taken before the onset of symptoms	Place of the food ingestion	Intake of medicine or hospital visit (name of the diagnosed disease)
	Duration of diarrhea	Instances of diarrhea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cough/ fever	days	times	Watery/ milky/ mucous/ bloody			

3. Measures taken for persons with diarrhea symptoms

- ☐ Sent home after stool collection ☐ Guided to hospital ☐ Sent to hospital
☐ Other

[붙임 제4의2호서식(중국어)]

有症状者调查表（2人以上有腹泻症状情况用）

调查员姓名：

调查日期：20 . . .

1. 团体现状

入境时间				航班名称/船舶名称		出发地		
旅行期间				旅行社名称 (团体名称)		导游/负责人 联系方式		
旅行日程	日期			旅行地				
乘客现状	乘坐人数（人）			回收 健康状况 询问表	中转 旅客	团体游客（人）		
	共计	乘务员	乘客			总人数	症状	收集粪便

2. 有症状者现状

姓名	症状		腹泻状态	出现症状 日期	出现症状前 摄取食物	摄取 地点	是否服用药物及 是否去医院就诊 (诊断名称)
	腹泻期间	腹泻次数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腹泻、呕吐、腹痛、咳嗽、发热		水状、淘米水状、黏液性、血便				
	日	次					

3. 措施

- ☐ 让出现腹泻症状者接受粪便检查后回家
 ☐ 介绍医院
 ☐ 转送医院
 ☐ 其他

[붙임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립○○검역소는 검역업무 및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조치	2개월
민감정보 건강정보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조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및 유증상자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건강정보	2개월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조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15조(검역조치),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haring with Third Parties

The National OO Quarantine Station intends to collect and use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share it with third parties, in order to carry out its quarantine responsibilities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Please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carefully before deciding whether or not to agree.

▶ Items of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collected and used

	Item	Purpose of collection/use	Retention/Use period
Personal Information	Name, gender,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phone number, address, passport number	Quarantine investigation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2 months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However, if you refuse to give consent, this may imped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above?

☐ I agree.

☐ I do not agree.

▶ Information on sharing of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with third parties

Recipient institution	Purpose of sharing	Items shared	Retention/Use period
Public health center in the jurisdiction of your address (local governmen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atic patients	Name, gender,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phone number, address, passport number, health-related information	2 months

※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as described above. However, if you refuse to give consent, this may imped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 Do you agree to the sharing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with third parties as described above?

☐ I agree.

☐ I do not agree.

- Law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5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17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3 (Limitation to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rticle 24 (Limitation to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Quarantine Act: Article 12 (Quarantine Inspection), Article 12-2 (Duty to Report and Measures), Article 12-3 (Aircraft Quarantine Inspection), Article 12-4 (Ship Quarantine Inspection), Article 12-5 (Quarantine Inspection for Land Route), Article 15 (Quarantine measures), Article 20 (Preventive Measures against Non-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Article 25 (Bringing-In and Inspection of Dead Body), Article 28 (Issuance of Other Certificates), Article 28-2 (Internationally Certified Vaccinations), Article 29 (Management of Health and Sanitation in Quarantine Areas)

Date (YYYY/MM/DD):

Your Name:

(Sign or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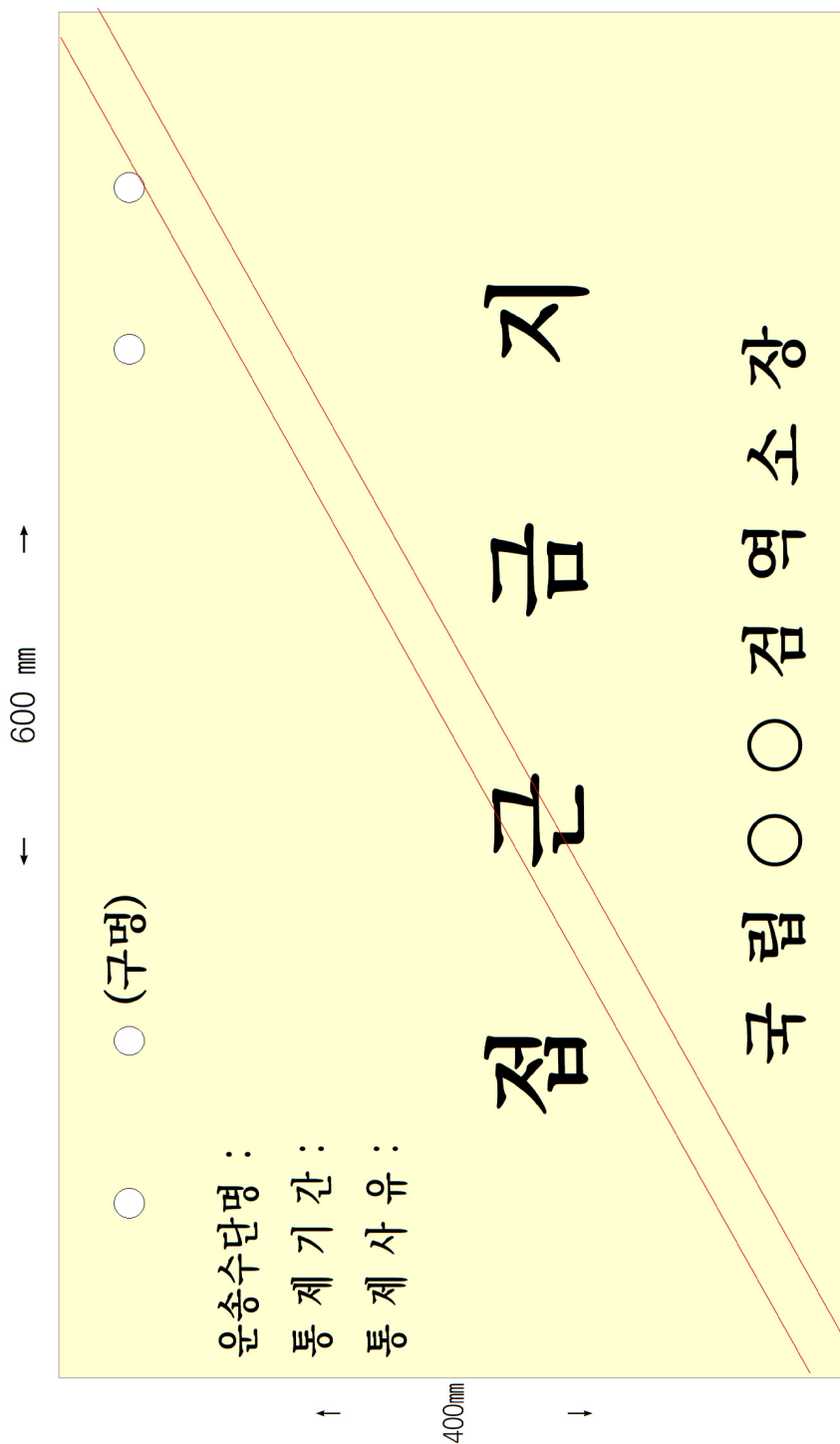
Name of Legal Representative:

(Sign or Seal)

To the Director of National OO Quarantine Station

[붙임 제6호서식]

「접근금지 표지판」



※ 사진 : 빨간색(2줄), 글자 : 검정색, 바탕색 : 노란색

검역신청서(시체 등 반입 요청)

운 송 수 단 명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여권번호)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지역	
반입 대상	☐ 시 체	관의 상태	☐ 알루미늄관 ☐ 석관 ☐ 유리관 ☐ 나무관 ☐ 기타()
	☐ 유골·유물	종류	
		밀봉상태	☐ 불침투성 재질()로 밀봉 ☐ 기타()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관 계	
「검역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검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시체반입 시 제출) 2. 방부처리증명서(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 유골 및 유물 반입 시 제출) 3.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또는 선하증권(B/L) 사본(화물 운송 시) 4.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사망자의 신원확인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방부처리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기재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영사관 또는 해당 국가 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붙임 제8호서식]

검역확인서(시체 등 반입 허용)

No. _____

운 송 수 단 명				
사망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유무		(유, 무) ※ 검역감염병 명 _____		
보존상태	1. 침투성 여부	(침투성, 불침투성)		
	2. 방부처리유무	(유, 무)		
	3. 밀봉상태			

「검역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검역관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장

증인

[붙임 제10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점검표

2000. 00. 00.

점검자 ○○권 질병대응센터 직급(위) 이름 (인)
수검자 직급(위) 이름 (인)

점검 내용		예	아니오	비고
①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필수조건				
1	예진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자격증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	
2	기 지정된 내과전문예진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1명)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백신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4	백신 전용 냉장고에 온도 기록 기능이 있습니까?	☐	☐	
5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유효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에피네프린, 수액세트 등	☐	☐	
6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청진기, 앰부백, 자동제세동기 등	☐	☐	
② 증명서 발급 및 폐기 관리				
1	접종자 내역, 월별 증명서 발급 현황이 검역소에 보고된 통계와 일치합니까?	☐	☐	
2	증명서 수불대장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	☐	
3	발급신청서 및 정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수입인지 징수금액 및 소인처리 여부	☐	☐	
4	증명서 잔여량과 증명서 수불대장과의 일치합니까?	☐	☐	
③ 예방접종 보고사항				
1	국립검역소에 아래의 보고를 이행하였습니까? (익월 5일 전까지) - 월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현황 - 정부수입인지 - 면제증명서 발급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	☐	☐	
2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까? -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4 증인 관리				
1	증인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지정 등)	☐	☐	
2	증인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	☐	
5 백신 관리				
1	백신을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관리 중입니까?			
2	백신 전용 냉장고의 온도 기록 데이터가 적정온도(2~8℃) 범주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	
3	백신 전용 냉장고에 대한 온도 기록 데이터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	☐	
4	백신 수급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	☐	
5	백신 수급관리 대장과 실제 백신 사용량 및 잔량이 일치합니까?	☐	☐	
6	질병관리청에 아래의 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까? - 유효기한 도래(6개월 미만) 백신 잔량 보고 - 백신 폐기사유 발생 시 보고 - 백신 수불현황 분기별 보고 - 백신 월별 수불현황 및 사용현황 보고	☐	☐	
7	보유 중인 백신의 유효기한이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	☐	
8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하였습니까?	☐	☐	
〈기타 사항〉 백신 실비 징수 여부 등				
〈현장 총평〉				

제1장

총칙

제2장

건립준비

제3장

예방접종

제4장

검역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붙임 제11호서식]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앞 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별	☐ 남 ☐ 여

확인사항	답변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닭고기, 젤라틴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경련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여성)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답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실시하는 예방접종 업무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예	☐ 아니오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제공받는 기관: 관련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상단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과 동일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사전예진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서명) 피접종자와의 관계: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 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9개월 미만의 영아 ※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가능성이 다소 있어 의료인과 상담 후 예방접종	
나) 임산부, 수유부	
다) 계란, 닭고기, 젤라틴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	
라)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마) 흉선 질병(Thymus disease)의 병력이 있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예: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감염자들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황열예방백신 접종가능	
⑥ 과거 황열예방접종을 받은 후 심각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을 나타낸 사람	
⑦ 희귀한 유전성 과당불내성 환자	
접종 후 주의사항	
가) 14일 이내 헌혈 금지	
나) 3일 정도 금주	
다) 3일 정도 사우나, 통목욕 삼가(샤워는 가능)	
라) 3~14일 후에 미열과 경한 두통, 몸살(근육통), 주사부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이상반응(심하고 지속적인 구토나 발진, 이상감각, 악성 두통, 호흡곤란, 경련, 혼수, 산증, 근육 혹은 간 세포용해, 림프구 및 혈소판 감소, 신부전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다발성장기부전(사망까지 가능)과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중대한 신경계통 부작용(수막뇌염, 길랭-바레증후군, 급성산재성 뇌척수염 등)이 일어날 수 있음(*접종 후 약 1달 이후에도 발생가능). 이상반응 등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접종자(의료인) 기록란	
체온: _____ °C	점검결과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하였음	☐ 예 ☐ 아니오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 을 설명함	☐ 예 ☐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Yellow fever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 and Privacy Consent Form

(front)

Name			Date of birth		
Phone number	(Home)	(Mobile)	Sex	☐ Male	☐ Female

Question	Answer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your symptom(s). ()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llergic reactions such as hives or rash after having taking medication, eating food (including eggs, chicken, and gelatin), or being vaccinated?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dverse reaction to any vaccine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s). ()	☐ Yes	☐ No
Have you been vaccinated in the past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s). ()	☐ Yes	☐ No
In the last month, have you ever had any cramps?	☐ Yes	☐ No
Have you ever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birth defects, asthma or a lung disorder, heart disease, liver disease, diabetes or an endocrine disorder, or a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what you were treated for. ()	☐ Yes	☐ No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ological disorders? If yes, please describe the disease(s). ()	☐ Yes	☐ No
In the past three months, have you received any steroids, anti-cancer drugs, or radiation treatment?	☐ Yes	☐ No
In the past year, have you received any blood transfusions or immunoglobulin therapy?	☐ Yes	☐ No
(For women only) Are you currently pregnant or planning to get pregnant in the next month?	☐ Yes	☐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Answe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 hereby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pursuant to Articles 15 and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Purposes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 Sensitive information items: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phone number (home/mobile) ☐ Retention and use period: Follows the period defined under applicable laws	☐ Yes	☐ No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ay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s 17 and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following: ☐ Purpose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 Institutions to b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pplicable healthcare institution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the period of their retention and use: Same as above i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Yes	☐ No
I hereby agree to receiving this vaccination after I have been pre-checked and fully informed about potential adverse effects. Vaccinee (legal representative/guardian) name: _____ (Signature) Relationship with the vaccinee: _____ _____ Month _____ Day, _____ Year		

※ You have the right to provide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If you do not provide consent, however, it may limit your ability to receive a vaccination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thereof.

(Back)

Persons who cannot be vaccinated	
가) Infants less than 9 months old	
※ Those 60 years or older should be vaccinated after consulting with a medical personnel due to the small chanc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나) Pregnant women and breastfeeding mothers	
다) Persons hypersensitive to eggs, chicken, and gelatine	
라) Persons with a severe fever (those whose body temperature is 38℃ or above)	
마) Persons who have a history of thymus disease, or persons with congenital or acquired immune malfunction (e.g.,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 Persons infected with HIV may be vaccinated for yellow fever if they do not show AIDS, or there is an instruction by the physician.	
⑥ Persons who have had any serious allergic reaction (anaphylaxis) to yellow fever vaccination	
⑦ Patients with hereditary fructose intolerance	
Things to note post-vaccination	
가) No blood donations are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나) No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다) Neither the sauna nor a full bath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But showers are permitted.)	
라) Some may have a slight fever, headache, fatigue (muscle pain), or pain at the injection site for 3 to 14 days following the vaccination. In rare cases, some may experience an adverse effect (severe and continued vomiting or rash; skin tingling or numbness; severe headache; shortness of breath; cramps; coma; increased acidity in the blood; disintegration of muscle or liver cells; decreased lymphocytes and platelets; or renal failure). Even if it is rare,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life-threatening) and allergic reactions may occur, as may serious side effects in the nervous system (meningoencephalitis; Guillain-Barre Syndrome; or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It may occur even one month after vaccination).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the vaccination authorities.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form	
Body temperature: _____ °C	Notable findings upon check-up: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about things to follow post-vaccination and any possible adverse effects.	☐ Yes ☐ No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that he or she should "stay for 20 to 30 minutes at the vaccination institution to observe any adverse effects."	☐ Yes ☐ No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name:	(Signature)

[붙임 제12호서식]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및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앞 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성별	☐ 남	☐ 여

확인사항	답변	
오늘 아픈 곳(특히 위, 장 등)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닭고기, 젤라틴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입원사유를 적어주십시오()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답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업무 관련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건강정보), 전화번호(집/휴대폰)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에 따름	☐ 예	☐ 아니오
개인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립검역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목적: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 제공받는 기관: 관련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상단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과 동일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사전예진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서명) 피접종자와의 관계: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정보주체는 예방접종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 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현재 중증의 발열성 질환이 있는 사람(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나) 최근 다른 약을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중이면 접종 전 상담 ※ 임신부, 수유부는 접종이 가능하나 의사 및 약사와 상담 다) 급성위장관질환이나 급성열성질환이 있는 경우 라) 경구콜레라 예방백신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 경우	
접종후 주의사항	
가)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나) 접종 1시간 전과 접종 후 1시간이내에는 음식 및 음료, 다른 의약품 섭취 금지 다) 3일 정도 금주 라) 가끔 위장 관계증상(복통, 위경련, 설사)이 있을 수 있음. 극히 일부의 경우 고열, 전신적인 불편감,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콧물, 기침, 현기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반응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기관에 문의	
콜레라 예방접종 참고사항	
가)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 기초접종 2회,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 효과를 위하여 2년 이내 재접종 나) 2~5세 소아 : 기초접종 3회, 각각의 접종은 1~6주 간격, 지속적인 방어 효과를 위하여 6개월 이내 재접종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접종자 기록란)	
체온: _____ ℃	점검결과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하였음	☐ 예 ☐ 아니오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함	☐ 예 ☐ 아니오
접종자(의료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Cholera Pre-Vaccination Screening Checklist and Privacy Consent Form

(front)

Name		Date of birth	
Phone number (Home)	(Mobile)	Sex	☐ Male ☐ Female

Question	Answer	
Are you sick today (particularly stomach or gastrointestinal discomfort) If yes, please describe your symptom(s). ()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llergic reactions such as hives or rash after having taking medication, eating food (including eggs, chicken, and gelatin), or being vaccinated?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Yes	☐ No
Have you ever had any adverse reaction to any vaccine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ation(s). ()	☐ Yes	☐ No
Have you been hospitalized in the past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reason(s). ()	☐ Yes	☐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Answe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 hereby provide consent to the following terms of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pursuant to Articles 15 and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Purposes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 Sensitive information items: Sensitive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phone number (home/mobile) ☐ Retention and use period: Follows the period defined under applicable laws	☐ Yes	☐ No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ay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s 17 and 2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following: ☐ Purpose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healthcare institutions in case of an adverse event after vaccination ☐ Institutions to b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pplicable healthcare institution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Personal information items and the period of their retention and use: Same as above i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Yes	☐ No
I hereby agree to receiving this vaccination after I have been pre-checked and fully informed about potential adverse effects. Vaccinee (legal representative/guardian) name: _____ (Signature) Relationship with the vaccinee: _____ _____ Month _____ Day, _____ Year		

※ You have the right to provide no consent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accination. If you do not provide consent, however, it may limit your ability to receive a vaccination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thereof.

(Back)

Persons who cannot be vaccinated	
가) Persons with a severe fever (those whose body temperature is 38°C or above)	
나) Consultation is required before vaccination if you have taken another medication or are currently on medication. ※ While pregnant women and breastfeeding mothers may be vaccinated, consultation with the physician or pharmacist is required.	
다) Persons with an acute gastrointestinal disorder or a fever	
라) Persons allergic to oral cholera vaccination	
Things to note post-vaccination	
가) No blood donations are allowed for 14 days after vaccination.	
나) No food, beverage, or other medication is allowed for 1 hour before and after vaccination.	
다) No alcohol is allowed for 3 days after vaccination.	
라) Some may experience gastrointestinal symptoms (stomach pain, stomach cramps, or diarrhea). In extremely rare cases, some may experience severe fever, systemic discomfort, nausea, vomiting, loss of appetite, a runny nose, cough, or dizziness. If you experience any of these symptoms, please contact vaccination authorities.	
Things to note for cholera vaccination	
가) Young children ages 6 or older and adults: Basic vaccination 2 times, at an interval of 1 to 6 weeks. Then, make sure to get re-vaccinated again within 2 years for continued protection.	
나) Young children ages 2 to 5: Basic vaccination 3 times, at the interval of 1 to 6 weeks. Then, make sure to get re-vaccinated again within 6 months for continued protection.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form	
Body temperature: _____ °C	Notable findings upon check-up: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about things to follow post-vaccination and any possible adverse effects.	☐ Yes ☐ No
I have fully informed the vaccinee that he or she should "stay for 20 to 30 minutes at the vaccination institution to observe any adverse effects."	☐ Yes ☐ No
Vaccinator (healthcare provider) name:	(Signature)

[붙임 제13호서식]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앞면)

MEDICAL CONTRAINDICATION TO VACCINATION	
예방백신접종에 대한 의학적 금기사항	
성명 Full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서명 Signature 인	
This is to certify that immunization against	
이 문서는 ()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금기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for	is medically
(Name of Disease-질병명)	(Name of Traveler-여행자 성명)
Exempt becaus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Date:dd/mm/yyyy) (발급일:일/월/년)	(Signature of Supervising Clinician) (담당의료인의 서명)

11×7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m²)

(뒷면)

INFORMATION FOR VACCINATION EXEMPTION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소지자 참고사항》
○ Reasons other than medical contraindications are not acceptable for exemption from vaccination(의학적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예방접종 면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What is mentioned below can be applied to travelers who hold this paper in their country of destination.(본 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목적지(도착지) 국가에서 다음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uarantine may be required for a few days at the destination. (도착지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Entry into the country which requires a yellow fever or cholera vaccination certificate may be refused.(황열 또는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Vaccination may be required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목적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11×7cm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m²)

[붙임 제15호서식]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 지도·점검표

1. 관리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2. 주요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점 검 결 과		
		0	x	비 고
가	방역소독 계획수립			
나	결과 보고 여부			
다	방역소독 실적 달성여부 (실적/계획)			
라	방역소독 결과 확인			

(건의사항)

3. 방역자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독업신고번호			
소재지 / 연락처			

4. 방역 관련 점검사항

구분	항 목	인적사항		확인서류
자격	■ 소독업신고증, 및 관련 자격증	성명:		
교육	■ 소독대행업자(종사자) 교육이수 - 최초교육 :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보수교육 : 1회 이상/3년	이수자: 이수일자:		
장비	항 목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 소독에 필요한 장비 - 분무소독기 : ()대			
	- 그 외 살충 · 살균소독에 필요한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약품	약품 및 사용내역(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약품)	점 검 결 과		
		양 호	불 량	비 고
	■ 약 품 명 : 1.			

위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관리자) : _____(인) 확인자(방역자): _____(인)

지도 · 점검자 : _____(인) _____(인)

[붙임 제18호서식]

검역관련증명서 등 재발급 신청서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 뒷면 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검역법」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a reissuance of the () certificate tha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 ☐ 전 발급 검역소명(Former Issuing Office) : 국립_____검역소
- ☐ 전 발급 연월일(Former Issuing Date) : _____년 _____월 _____일(yyyy/mm/dd)
- ☐ 재발급 신청사유 및 내용(Reason for Application)

구 분	변 경 전(Before)	변 경 후(After)
재발급 신청 사유 (Reason)		
선 박 명 (Name of Vessel)		
국 적 (Nationality)		
등록번호 (IMO/Registration No)		

신청 년 월 일(Date) : _____년 _____월 _____일(yyyy/mm/dd)

신청인 또는 대리인 (Applicant or Representative) : _____ (인) (Signature)

구비서류

1. 분실한 경우 : 해당 없음
2. 훼손된 경우 : 해당 증명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제19호서식]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 : 수입고철소독계획서

1.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선박총톤수	
고철수입국명		고철적재량(M/T)	
고철하역일시 (하역기간)		수입자	

2. 소독실시계획

구 분	'수 입 고 철
소독종류	
소독물량(M/T)	
사용약품명	
사용 약제량(ℓ)	
소독일시(기간)	
소독인원	
소독장소	
소독장비	

고철수입업체 감 독 관 :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요구사항

제3장

예방방역

제4장

검역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붙임 제20호서식]

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 목 : 수입고철소독 결과 보고서

1. 적재선박명 :

2. 수입국명 :

3. 수입자명 :

4. 소독내용

가. 소독물량

○ 고철량(M/T) :

○ 하역장(야적장) 면적(m^2) :

나. 사용약품명 :

다. 사용약제량

○ 원제량(l) :

○ 희석된 약제량(l) :

○ 희석비율 :

라. 소독일시(기간) :

마. 소독인원(명) : 명. 끝.

고철수입업체 감 독 관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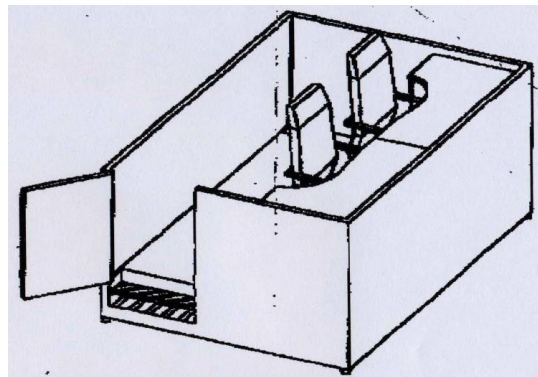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검역대 사양

구 분	규 격 (가로×세로×높이, cm)	형 상	재 질	비 고
고정식	300×200×135 (바닥높이 30)	별도1	목재	○ 위치 : 입·출국장 입구
이동식	200×100×103	별도2	"	○ 위치 : 각 게이트

※ 검역대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1개조로 구성하며, 규격 및 출입문 위치는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도 1] 고정식



[별도 2] 이동식



[붙임 제22호서식]

〈검역조사 생략 심사결과 통보서〉

- 수신자 :
- 도착(입항)예정 일시 :
- 운송수단명 :
- 생략 사유 :
- 「검역법」 제6조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건의 심사결과 (적합/부적합)을 통보합니다.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합격한 운송수단의 다음 도착지가 국내일 경우,
다음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반드시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 . . .

국립○○검역소장

직인

[붙임 제24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국립()검역소·()병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질병관리청()권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이하 ‘국립() 검역소’)로 한다)’와 ‘()병원’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하나, ‘국립()검역소’와 ‘()병원’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한다.

하나, ()병원은 국립()검역소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배부 받아 국제공인 예방접종 확인 증인을 날인하여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하나,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내용과 방법은 「검역업무지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국립()검역소
소장 0 0 0

()병원
원장 0 0 0

(서명)

(서명)

[붙임 제25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위임인
(접종받은 자)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관계 :

□ 위임사항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황열/콜레라) 발급(재발급) 신청 및 수령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일자 :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제26호서식]

〈검역 서류심사 결과통보서〉

- 수신자 :
- 입항예정 일시 :
- 운송수단명 :
- 서류 심사로 실시한 검역 결과 :
- 「검역법」 제12조의4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서류심사로 실시한 검역 결과 (합격/불합격)을 통보합니다.

- (합격된 선박) 선박의 장은 선박의 도착 즉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승무원·승객명부,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을 검역소장에게 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 (불합격된 선박)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은 후 검역증이 발급됩니다.

20 . . .

국립○○검역소장

직인

검역조사 결과통보서(선박용)
(Notice of Sanitation Results)

☐ 수신자(Dear) :

☐ 일 시(Issue Date) :

우리 검역소에서 실시한 선박가검물 세균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_____이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the
_____ was detected from the under-mentioned vessel.

해당 선박의 장으로 하여금 선원 및 승객에 대한 감염병 예방홍보와
위생시설에 대한 자체소독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건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hare this notice with your all crew members and keep your
facility and all equipment clean and sanitary immediately.

☐ 운송수단 소유 회사명(Name of Owner Company) :

☐ 국제해사기구 고유번호(IMO Number) :

☐ 선 명(Name of Vessel) :

☐ 선적항(Country of Registry) :

☐ 검역일시(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

☐ 검체(Specimen) :

국립○○검역소장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붙임 제27-2호서식]

검역조사 결과통보서(항공기용)
(Notice of Sanitation Results)

☐ 수신자(Dear) :

☐ 일 시(Issue Date) :

우리 검역소에서 실시한 항공기 가검물 세균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_____ 이 검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that: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the _____ was detected from the under-mentioned aircraft.

해당 항공기의 장으로 하여금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감염병 예방홍보와 위생시설에 대한 자체소독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건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hare this notice with your all crew members and keep your facility and all equipment clean and sanitary immediately.

☐ 운송수단 소유 회사명(Name of Owner Company) :

☐ 항공기 등록번호(Registration No.) :

☐ 편 명(Flight No.) :

☐ 검역일시(The date of quarantine inspection) :

☐ 검체(Specimen) :

국립○○검역소장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붙임 제29호서식]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자진 신고 대장

신고일	신고자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편명/ 선박명	체류·경유 검역관리지역 및 해당기간	특이사항(증상 등) 및 조치사항	담당 검역관	비고
'17.8.8	홍길동 (한국, 63.2.6)	010-1234-5678	KE838	○미얀마(폴리오) '17.7.28~8.1.(5일)	건강상태질문서에 콧물·기침 증세가 있다는 응답에 따라 체온측정,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등 실시	김철수	

국제공인 예방접종 백신 수불현황

(20 년도 월)

□ 제출기관명:

기관명	백신명	전년도 이월량 (A)	백신 입고량		백신 사용량			총잔량* (A+B-C-D-E)	잔량별 유효기간
			0월	올해 누계 (B)	구분	0월	올해 사용 누계 (C) 올해 폐기 누계 (D) 올해 반납 누계 (E)		
00병원	홍역	64	50 (25.5.31)	150 *100개(24.9.30) *50개(25.5.31)	사용량	10	99	84	*34개(24.9.30) *50개(25.5.31)
					폐기량	1	1		
					전배량	30 (24.9.30)	30 (24.9.30)		

※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하여 배정한 백신만 작성(폐기량 포함하여 작성)

※ 작성기준일 : 매 월 마지막 날(예: 1월 조사 시 1월 31일 점종업무 마감 후)

※ 총 잔량 작성 시 유효기간별 백신 잔량 작성

[붙임 제31호서식]

○○○(감염병명) 검역관리지역발 검역조치 현황

일자	검역관리지역발 주요 경유국 입국자 수							건강상태질문서			
	소계	국기명	국기명	국기명	국기명	국기명	국기명	징구 건수	징구율(%)	유증상자 수	무증상자 수

※ 위 서식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제32호의2서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호흡기 유증상자 진단감시 결과표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
검체채취자 수						
성별	남					
	여					
연령	10세미만					
	1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국적	내국인					
	외국인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병원체		음성				
		단일병원체(소계)				
		Human adenovirus				
		Human metapneumovirus				
		Rhinovirus				
		RSV				
		Human Coronavirus	OC43			
			NL63			
			229E			
		parainfluenza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Influenza	A(H1N1) pdm09			
			A(H3N2)			
			B			
		다병원체(소계)				

※ 위 서식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발생국) ○○(감염병명) 검역 일일상황 보고

(국립○○검역소, '00.00.00(요일))

가) ○○(발생국명) 입국자 검역 현황('00.00.00, 00시 기준)

○ 입국자 총괄(누적) 현황

입국자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SMS전송	시도 통보	입국당시 증상		유증상자 조치사항	
				유	무	보건교육 후 귀가	격리병상 이송

○ 일자별 입국자 검역 현황

입국 일자	입국자 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SMS 전송	시도 통보	입국당시 증상		유증상자 조치사항	
					유	무	보건 교육후 귀가	격리병 상이송

* SMS 미전송 사유:

나) 입국자 세부현황(첨부)

연번	입국일	편명	성명	성별	연령	증상정보	약 복용	주소 (시도, 시군구)	의심환자 분류 여부	국적	경유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위 서식은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제35호서식]

검 체 의 퇴 서				
의뢰 기관	가) 의뢰기관명		나) 의뢰자 명	(전화번호)
	다) 검체의뢰일			
	라) 검체번호			
	마) 검체 채취일			
	⑥ 검체 채취자			
	⑦ 검체 종류			
유증상자 정보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⑩ 거주지			
	⑪ 운송수단명			
	⑫ 여행력			
	⑬ 검역관리지역 방문내역			
	⑭ 주요 증상			
검사항목	바이러스 질환		세균 질환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7종(IFV, HAdV, HMPV, HRV, HCoV, HRSV, HPIV, HBoV) ☐ 기타()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비브리오패혈증 ☐ 세균성 장관감염증 5종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붙임 제37호서식]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연장신청 민원처리 대장

[illegible]

[붙임 제38호서식]

승무원 · 승객 체온체크 결과지

Crew and Passenger Temperature Check Report

- 선박명(Ship Name) :
○ 작성일자(Date of preparation):

[illegible]

제출일시(The date of submission): 년(Year) 월(Month) 일(Day)

선장은 위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The captain confirms that the above report has been written truthfully)

선장 성명(Master Name): (서명)

Signature

[붙임 제39호서식]

(검역감염병명) (의사)환자 접촉자 통합 조사서

조사자	소속 성명	연락처 조사일	년 월 일
-----	----------	------------	-------

□ (예) 환자정보(김철수 / 남 / 800122 / 편명 및 작성번호: KE123, 42G)

구분	●입국 정보 및 인적사항														●항공사, 법무부 등 협조 요청					●검역소 추가 작성				
	입항· 접촉일시	편명	탐승지	출발지	도착지	좌석 번호	승객/ 승무원· 선원	여권 번호	국적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국내 주소	휴대 전화	그외 연락처	중점검역 관리지역 여부*	접촉 유형*	환자와의 관계*	증상 (선택)	단제명 (선택)	비고 (직업 등)		
1	2023 1010 15:00	KE 123	도쿄	도쿄	제주 공항	42H	승객	BB	한국	홍길동	남	34	900100	국내 주소	010 1234 5678	02 719 1234	0	밀접	남편	발열	-	오리농장		
2	2023 1010 15:00	-	-	-	-	-	-	-	한국	김영희	여	24	000101	국내 주소	010 1234 5678	02 719 1234	해당 없음	밀접	-	없음	-	세관 직원		
3																								

※ 작성 방법

- ① (입국 정보 및 인적사항) 방역통합시스템 승무원 승객명부관리, 선원 승객명부관리에서 확인, 운송수단이 아닌 공항만 내 접촉자의 경우에는 접촉일시, 국적, 성명, 생년, 주민번호만 작성
 - ② (항공사, 법무부 등 협조 요청) Q-CODE,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자는 항공사, 법무부 등에 정보 제공 협조 요청 Q-CODE,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자와 공항만 내 접촉자는 주소 및 연락처 직접 확인
 - ③ (검역소 추가 작성) 중점관리관리지역 여부*, 접촉 유형*, 환자와의 관계(선택), 증상(선택), 단제명(선택), 비교
- * (중점관리관리지역 여부) 기존 '위험(발생)지역인국가' 항목 명칭 수정하여 향후 시스템 반영 예정
- * (접촉 유형) 기존 '환자구분' 항목 내 접촉자 유형 세분화(밀접/일시/기타)하여 향후 시스템 반영 예정
- * (환자와의 관계) 향후 시스템에 항목 추가 예정

제7장

참고

- [참고 1] 「선박위생관리 점검표(별지 제24호서식)」 작성요령
- [참고 2]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 [참고 3] 소독약품(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 [참고 4]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 [참고 5] 국립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현황
- [참고 6] 선박 검역 시 소독명령 업무처리 절차
- [참고 7] 입국자 대상 감염예방주의 문자 및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ITS) 현황
- [참고 8]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연장 도장

「선박위생관리 점검표(별지 제24호서식)」 작성요령

1. 점검 장소별 점검요령

가. 조리실(Galley)

1) 식품조리 시 이용시설의 주기적 청소 및 청소일지 사용 여부

* 천정·바닥·내벽 등의 청결상태

2) 식품 안전보관, 준비 및 세정 여부

* 식품 적정 최소온도 및 최대온도 유지

3) 최소 1개 이상의 핸드워싱 머신 및 관련시설 설치 유무

* 페이퍼 타월/핸드드라이어, 비누 및 쓰레기통

4) 식기·조리기 취급

가) 소독시설 유무

나) 식기류의 보관상태

다)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증기의 열탕을 말한다. 식기류의 보관 장소는 문짝이나 망문이 없어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조리실 식당 등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5) 적절한 조명 및 충분한 환기시설 등 가동 유무

가) 방서·방출시설 구비

나) 배수구 차단성

다) 문·창문·환기구의 밀폐성

6) 조리실 및 조리원의 위생개념

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의 적정착용 및 청결상태 유지

나) 손·손톱 등의 청결상태 유지

다) 예방접종증명서 및 소지여부

나. 식료품저장실(Pantry) / 창고(Stores)

1) 위생적 보관 및 관리

가) 보관품은 바닥·벽과 일정간격 유지

나) 청소 및 소독실시

2) 적정 보관 및 관리

가) 식품의 청결도(유통기한 및 식품 적정온도)

나) 냉장고의 온도(온도측정계기 설치 여부)

〈기준 온도〉

- 냉동식품 : -18℃

- 육류·어류 : 0~3℃ 이하

- 우유·유지류 : 4℃ 이하

- 과일·야채 : 7~10℃ 이하(냉장보관)

- 냉장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 어류 및 어류가공식품, 우유 및 우유가공식품, 달걀 및 달걀 가공식품 5℃ 이하 유지 / 과일과 야채는 10℃ 이하 보관

다. 선창(Hold) / 화물(Cargo)

1) 용수나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

2)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 검사 시 선창의 완벽한 검사를 위해 모두 비워있어야 함

라. 선원실(Quarters:crew) / 사관선실(Officers) / 객실(Cabin passengers)

1) 청결 관리 여부

가) 침구류, 의복 등의 청결상태

나) 적절한 환기유지

2) 개인 화장실 위생적 관리

가) 바닥·벽·바닥과 벽 연결부위의 청결상태

나) 청소 및 소독실시

마. 갑판(Deck space) / 엔진실(Engine room)

설치류나 벌레의 서식 등 유무

바. 음용수(Portable water)

1) 배수관

가) 탱크파이프 전용·겸용 여부

나) 주수구·통기구 관리

2) 계량기

가) 계량식 유무

나) 측량기 보관상태

3) 소독제의 량(크로로칼키 5kg이상) 다만, 생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사. 하수(Sewage)

하수시스템 누출, 오버플로우 또는 분리 여부

제1장

총칙

제2장

건조조마

제3장

예감
방염
부

제4장

공검
무역
원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아. 의료시설(Medical facilities)

- 1) 의약품 보관시설 및 의료폐기물 처리공간 확보 여부
- 2) 진료기록 관리 여부
- 3) 진료시설 청결 유지관리 여부
- 4) 의약품 및 예방접종 보유현황

자. 기타(Other)

- 1) 선내 전반의 정돈 상태
하역중의 선박을 검사할 때에는 하역장소, 하역으로 인한 통로, 바닥 등의
불결상태는 점검에서 제외
- 2) 공중 화장실 관리
가) 유수량·비누 비치 여부
나) 청결상태
- 3) Ballast Tanks
Ballast Water 위생·관리 상태 점검
- 4) 필수 물품 구비 여부
가) 크레졸 2ℓ, 살충제에어로졸 300ml 12~25개(유제원액 1~2ℓ)
나) 쥐틀(또는 쥐덫, 끈끈이트랩 등) 5개 이상 또는 쥐약 500g(액체 500cc이상),
쥐막이판 계선줄당 각 1개 및 비축분 2개 이상
※ 요트 등 선박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 가~나) 구비 필요 여부 판단
- 5) 예방접종 여부
감염병 국내유입 우려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 있을 경우 조사

2. 점검 항목별 작성요령

가.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Discovery and marks of rats)

- 1) 쥐의 발견 및 흔적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YES'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나. 벌레의 서식유무(Insects)

- 1) 벌레의 서식을 확인한 경우 'YES'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E'

다. 위생·관리상태(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 1) 위생·관리 상태 확인 결과 양호한 경우에는 'GOOD'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AD'

3. 관련조치 및 의견 작성

관련조치 및 의견 내용을 기재(예 : 소독명령, 자체소독, 시정조치 등)

4. 검체채취 작성요령

검체채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별로 검체번호, 검체명, 채취장소를 기재

[참고 2]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민원사무명	근거 법령	처리 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 및 수수료
선박위생관리증명서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별지 제25호)	법 제27조	2일	신청→접수→확인 (위생검사)→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 위생검사수수료 시행규칙'별표3'참고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	법 제28조제1항	2일	신청→접수→소독 →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소독증명확인서(물품) (별지 제27호)	법 제28조제2항	2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병원체 검사증명서(물품) (별지 제28호)	법 제28조제2항	5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서발급	• 전자, 우편,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	법 제28조제3항	5일	신청→접수→검사 →증명서발급	• 전자, 우편,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수수료 - 증명서 : 1,000원 - 검사료 : 실비
소독증명서(운송수단) (별지 제30호)	법 제28조제4항	2일	신청→접수→소독확인→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22~23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32호)	법 제28조의2	즉시	신청→접수→예방접종→증명서발급	• 인터넷, 방문민원 • 신청서(별지제31호) 1부 • 발급수수료 : 1,000원 • 예방접종수수료 - 콜레라 : 실비 - 황 열 : 실비

[참고 3]

소독약품(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I. 기본방향

- 철저한 검역업무 수행으로 해외로부터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 소독약품별 약제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II. 적용대상 : 소독대행업체(살충·살균 소독)

III. 관련법령 : 「검역법」 제15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IV. 살충·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명시

- 소독결과 확인 시 「소독약품별 약제사용 기준」에 따라 소독기준 이행준수 여부를 확인
 - *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에 명시된 약품 이외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소독약품의 환경부 승인 유무확인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 → 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확인

V. 행정사항

- 소독명령에 대한 소독대행업체의 소독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 ‘소독약품별 약제사용 기준’을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업무

제3장

예방
감염병
관리

제4장

검역
공무원
원

제5장

행정
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소독약품별 약제사용기준〉

제품명(한글)	네버바이트40(퍼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싸이언스	품목	감염병예방용살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05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494-32	허가일자(식약처)	2000-08-09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따라 사용한다.
3. 희석방법, 적용비율, 사용방법(파리, 모기, 바퀴벌레 구제에 사용할 경우)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파리	직접분무	이 약 3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 ²
모기	직접분무	이 약 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 ²
바퀴벌레	직접분무	이 약 3.2L를 물 1,000L에 넣어 잘 혼합	79.3mL/m ²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지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1.닥터솔루션살균소독액 2.쿼트플러스액		
회사명	(주)한성바이오켄	품목	기타방역용소독제제
승인번호(환경부)	2719-0001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835-1	허가일자(식약처)	2006-07-13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대 상	희석방법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200배 희석 (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명(한글)	델타킹유제(데카메트린)		
회사명	아성제약(주)	품목	감염병예방용살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43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830-10	허가일자(식약처)	2007-07-31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따라 사용한다.

나.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대상해충	분무방법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직접분무시	기 허가 사항과 동일 (700배)	기허가 사항과 동일 (희석액 40mL/m ²)
	가열연막 사용시	250배 희석 (2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mL/m ²
파리	직접분무시	기 허가 사항과 동일 (300배)	기허가 사항과 동일 (희석액 40mL/m ²)
	가열연막 사용시	150배 희석 (149L 등유에 본제 1L를 넣어 잘 혼합하여 사용)	희석액 5.4mL/m ²

* () 아성제약 제공

다. 사용장소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품명(한글)	백클린		
회사명	(주)오송	품목	감염병예방용살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42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928-10	허가일자(식약처)	2007-07-23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1) 분무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성충 : 직접분무 : 100~2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 ²
	유충 (장구벌레) : 수량 1m ³ 당 본제 10~20mL를 물에 희석	에토펜프록스 0.5~1.0ppm
파리	성충 : 직접분무 : 100~2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 ²
	표면잔류분무 : 25~50배 물에 희석	
	유충 (구더기) : 유충 발생장소 : 4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2ℓ/m ²
	쓰레기 퇴비 : 600~800배 물에 희석	희석액 4ℓ/m ²
바퀴벌레	표면잔류분무(도포) : 20~30배 물에 희석	희석액 50mL/m ²

2) 연막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가열연막 : 150배 등유에 희석	희석액 2.5mL/m ²
파리	가열연막 : 150배 등유에 희석	

3) 가열연무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모기	가열연무 : 1,000배 희석 (물 1L에 이 약 0.93mL를 넣어 잘 혼합)	희석액 30mL/m ²
파리	가열연무 : 80배 희석 (물 1L에 이 약 12.5mL를 넣어 잘 혼합)	
바퀴벌레	가열연무 : 100배 희석 (물 1L에 이 약 9.43mL를 넣어 잘 혼합)	

-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위생해충 및 쥐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지침 (국립보건원)”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따른다.

제품명(한글)	롱다운플러스(델타메트린)		
회사명	(주)국보사이언스	품목	감염병예방용살충제
승인번호(환경부)	2419-0018	승인일자	2019-01-01
허가번호(식약처)	0494-52	허가일자(식약처)	2006-06-16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
직접분무	모기	물 1L에 이 약 2.6mL를 넣어 잘 혼합(380배 희석)	희석액 79.3mL/m ²
	파리	물 1L에 이 약 2.5mL를 넣어 잘 혼합(400배 희석)	희석액 79.3mL/m ²
	바퀴벌레	물 1L에 이 약 8.3mL를 넣어 잘 혼합(120배 희석)	희석액 18.75mL/m ²
가열연막	모기	등유 1L에 이 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희석)	희석액 10L/ha
	파리	등유 1L에 이 약 4.0mL를 넣어 잘 혼합(250배 희석)	희석액 10L/ha
가열연무	모기	물 1L에 이 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희석)	희석액 10L/ha
	파리	물 1L에 이 약 3.3mL를 넣어 잘 혼합(300배)	희석액 10L/ha
	바퀴벌레	물 1L에 이 약 5.0mL를 넣어 잘 혼합(200배 희석)	희석액 10L/ha
극미량 연무 (ULV)	모기	물 9L에 이 약 1L를 넣어 잘 혼합(10배 희석)	희석액 0.4mL/m ²
	파리	물 9L에 이 약 1L를 넣어 잘 혼합(10배 희석)	희석액 0.4mL/m ²

나.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본 제제는 어독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계에 직접 노출되거나 바람 또는 빗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예. 하천변, 하천의 교각, 습지, 농수로, 하수구,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지침(질병관리청)” 및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따른다.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 (설치위치) 임시격리시설은 외부와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환자 이송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환기) 적절한 환기장치를 갖춘다
 - (착·탈의실)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탈의를 위한 격리된 공간을 마련한다.
 - (위생시설) 개인 화장실, 환자 세면대, 의료진 세면대가 설치된 1인 격리실을 사용한다.
 - (위생물품)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손잡이가 없는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비누, 종이 타월, 손소독제)을 마련한다.
 - (소통장치)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전화 등의 소통 장치를 마련한다.
 - (구비물품) 소지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용 체온계, 혈압계 등 진료장비를 구비한다.
 - (근무자 복장) 근무자는 N 95마스크(또는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의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근무자 임무) 근무자는 2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한다.
 - (환자식사) 환자의 식사는 검역소에서 제공하되 가급적 1회용 식기를 사용한다.
 - (환자퇴실 후 관리)
 - (폐기물 관리) 격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별도 분리를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독) 환자 퇴실이후에 격리실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 위 기준은 질병대응센터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참고 5]

국립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현황 ('25. 1. 1. 기준)

□ 격리관찰시설

구분	격리관찰시설		
	주소	수용 인원	비고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31(운서동 2851-57)	50	1인실 50실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3(대창동2가 36-5) 개인실: 201~203호, 301~304호, 401~404호 / 다인실: 501호(25)	36	1인실 11실 25인실 1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송1길 16 국립제주검역소 업무지원시설	49	1인실 24실 25인실 1실

□ 격리관찰실

구분		격리관찰실		
		주소	수용 인원	위치
인천 공항	본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여객터미널 2층 음압격리실	2	공항
	김포 공항지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2110호	1	공항
부산	본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 국립부산검역소 7층 격리시설 1~2호(개인실)	2	검역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병상 1~7(개인실)	7	여객 터미널
인천	본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57 신국제여객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2	여객 터미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438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2	크루즈 터미널
평택	본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1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1층	4	여객 터미널
	대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24 2층	2	검역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1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	2	여객 터미널
	청주 공항사무소	충청북도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여객청사 1층 입국장 내 격리관찰실	2	공항

구분		격리관찰실		
		주소	수용 인원	위치
군산	본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0 국립군산검역소 청사 내 3층 격리관찰실	2	검역소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78-14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격리관찰실	4	여객 터미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6번길 15 (국립울산검역소 내 3층 격리관찰실)	4	검역소
포항	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27 청사 내 3층	1	검역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CIQ동 1층	1	항만
	대구 공항지소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1층 입국장	2	공항
동해	본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1	여객 터미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68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본부 호산항 관리사무소 내 격리관찰실)	1	항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안인리 1-14(안인항 격리관찰실)	1	항만
	속초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2	여객 터미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내 격리관찰실)	2	공항
	고성지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109 (남북출입사무소 내 격리관찰실)	2	검역소
목포	본소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54-29 삼학부두 내 격리관찰실	1	항만 부두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77번길 20(항동) 목포검역소 내 격리관찰실	1	검역소
	무안 공항지소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 무안국제공항 내 격리관찰실 (1~5호실)	6	공항
여수	본소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7길 7 국립여수검역소 내 격리관찰실	2	검역소
	광양지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소1길 11 광양지소 청사 내 격리관찰실	1	검역소
마산	본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외부 별실	2	검역소 외부
	통영지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147-11 국립마산검역소 통영지소 본관 3층	3	검역소
	거제지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87, 국립마산검역소 거제지소 2층	1	검역소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업무

제3장

예감염병
무

제4장

검역
공무원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구분		격리관찰실		
		주소	수용 인원	위치
김해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1122)	2	검역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B구역(1166)	6	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C구역	2	공항
제주	본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91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1	여객 터미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261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 내 격리관찰실)	1	크루즈 터미널
	제주 공항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층 (제주국제공항 내 격리관찰실)	6	공항

[참고 6]

선박 검역 시 소독명령 업무처리 절차

구분	관련	업무처리 개요	관련 서식	소독명령 처리 절차
검역조사	법 제12조	검역조사 결과,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및 번식 상태가 확인된 경우 소독 명령	검역조사서	- 소독시행 명령서 발급 - 소독 실시 계획서 접수 *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경우 생략 가능 - 소독 결과 보고서 접수 - 소독 결과 확인
선박 보건위생 조사	법 제15조	-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 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독명령 실시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선박 위생관리 검사	법 제27조	- 선장/선박 소유자 : 선박 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별지 제24호서식의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위생관리검사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라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	- 신청서, 신청서 부표 -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제1장

총칙

제2장

검역업무

제3장

예방접종

제4장

검역원

제5장

행정사항

제6장

붙임

제7장

참고

[참고 7]

입국자 대상 감염예방주의 문자 및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ITS) 현황

(‘25. 1. 1. 기준)

□ 입국자 대상 감염예방주의 문자(SMS) 제공

가) 메르스 나) 페스트 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라) 엡폭스

가) 메르스

발송 문구	발송 시기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KDCA)입니다. 본 문자는 최근 메르스 발생 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14일간 2회 발송되는 문자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여 주시고, 진료받으실 때 반드시 해외 방문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동 문자는 여권 발급이나 로밍 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메르스 발생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1일차, 입국 8일차

나) 페스트

발송 문구	발송 시기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KDCA)입니다. 본 문자는 최근 페스트 발생 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발송되는 문자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 6일 이내에 발열, 두통, 구토, 오한, 전신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여 주시고, 진료받으실 때 반드시 해외 방문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6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동 문자는 여권 발급이나 로밍 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페스트 발생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1일차

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송 문구	발송 시기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KDCA)입니다. 본 문자는 최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발송되는 문자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 안과 증상과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폐렴, 급성호흡기 부전,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여 주시고, 진료받으실 때 반드시 해외 방문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0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동 문자는 여권 발급이나 로밍 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1일차

라) 엡폭스

발송 문구	발송 시기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KDCA)입니다. 본 문자는 최근 엡폭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발송되는 문자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발진, 림프절 부종 등 엡폭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하여 주시고, 진료받으실 때 반드시 해외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21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 동 문자는 여권 발급이나 로밍 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엡폭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1일차

□ 의료기관대상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ITS)

가) 메르스 나) 페스트 다) 동물인플루엔자 라) 엡폭스 마) 마버그열

가) 메르스

[질병관리청 알림] 동 수진자는 메르스 발생 국가(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의심 환자 전원/귀가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의심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나) 페스트

[질병관리청 알림] 동 수진자는 페스트 발생국가(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로 발열, 오한, 기침, 혈담, 두통, 구토, 전신통증, 림프절 부종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의심 환자 전원/귀가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의심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다) 동물인플루엔자

[질병관리청 알림] 동 수진자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국가(멕시코, 캄보디아)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로 결막염 등 안과 증상과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의심 환자 전원/귀가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의심환자, 의료진 및 직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라) 었폭스

[질병관리청 알렘] 동 수진자는 었폭스 발생 국가(가봉,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로 발열, 발진, 림프절 부종 등 었폭스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 및 안내사항: 1) 진료 시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를 준수 2) 었폭스 의사환자 신고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하기 3) 환자에게 자택 격리 및 예방수칙 준수 권고하기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마) 마버그열

[질병관리청 알렘] 동 수진자는 마버그열 발생 국가(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로 고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상체 중심의 반구진 발진, 결막염, 복통 등 마버그열 의심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바랍니다.

※ 의료기관 주의사항: 1) 의심 환자 전원/귀가시키지 말고 독립된 공간에 대기 2) 의심환자 마스크 착용 3)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심환자 혈액·체액 접촉 시 상황별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참고 8]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연장 도장

EXTENSION	0.5cm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has been extended till _____(dd/mm/y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_____	1.5cm
Date : _____(dd/mm/yy) Signature : _____	1.5cm

6.0cm

2025 검역업무지침

발 행 처 | 질병관리청

발 행 일 | 2025년 3월

편 집 처 |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전 화 번 호 | 043-719-9215

팩 스 | 043-719-9249

주 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홈 페이지 | <http://www.kdca.go.kr/>

ISSN : 2951-5564

2025

**검역업무
지침**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ISSN 2951-5564